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11

융합시대에 적합한
LBS 사업분류 및 규제체계 연구
(A Study of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of LBS
in New Convergence Society)

2011. 10

연구기관 :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융합시대에 적합한 LBS 사업분류 및 규제체계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0월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 사단법인 진파통신과 법 포럼

총괄책임자 : 오병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구원 : 윤종인(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승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우섭(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시직(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목 차

요 약 문	1
제1장 서 론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내용	8
제3절 연구의 활용	10
제2장 LBS 사업 및 규제 동향	11
제1절 LBS 사업 동향	11
1. LBS의 개념	11
2. LBS의 발전 모습	11
3. LBS 관련 기술	15
4. LBS 활용 분야	18
5. LBS 산업 규모	26
제2절 각국의 LBS 사업 규제 동향	29
1. 미국	29
2. EU	35
3. 일본	37
제3절 우리나라의 LBS 사업 규제	40
1. 관련 법률	40

2. 사업 규제 현황	41
제3장 위치정보의 개념 및 유형의 재정비	43
제1절 위치정보 개념의 재검토	43
1.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개념	43
2. 문제점	79
3. 개선방안	85
제2절 위치정보 유형의 재검토	91
1.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의 유형	91
2.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 유형에 따른 규제	93
3. 위치정보의 침해 및 오·남용에 대한 규제제도	96
2.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문제점	97
3. 위치정보 유형을 중심으로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안	101
제4장 위치정보 사업의 분류 및 규제의 재정비	107
제1절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의 분류체계	107
1. 위치정보 관련 사업 분류 체계	107
2. 위치정보 관련 사업 분류 체계의 문제점	115
3. 개선 방안	122
제2절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의 규제체계	132
1. 위치정보 관련 사업 규제체계	132
2. 위치정보 관련 사업 규제체계의 문제점	145
3. 개선방안	156
제3절 위치정보사업의 진흥을 위한 고려	160
1. 위치정보의 산업적 가치	160

2. 위치정보의 공익적 가치	161
3.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163
제5장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안	166
제1절 단기적 개정제안	166
1. 단기적 법개정 방향	166
2. 개념의 재정비	167
3. 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 정비	168
4. 위치정보 보호규정 정비	172
5. 위치정보사업 규제 정비	173
6. 기타	174
7. 개정안 신구대조표	178
제2절 장기적 검토방안	205
1. 서론	205
2. 위치정보보호법의 특수한 지위	205
3. 위치정보 유형의 장기적 검토방안	209
4.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사업의 형태 및 유형화	215
5. 장기적 개정 검토 방향	222
제6장 결론	229
참 고 문 헌	232

표 목 차

〈표 2-1〉 피쳐폰과 스마트폰 각 환경에서의 LBS 특성 비교	14
〈표 2-2〉 위치 정보 서비스의 유형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위치정보의 활용현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탁 과제 보고서)	19
〈표 3-1〉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 유형과 그 규제	95
〈표 4-1〉 2011년 1월 현재 허가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108
〈표 4-2〉 2011년 2월 14일 현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목록	110
〈표 4-3〉 자유의 제한과 해제의 형태	112
〈표 4-4〉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비교	115
〈표 4-5〉 규제의 근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과 이분법의 도출	116
〈표 4-6〉 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단계 이론	120
〈표 4-7〉 개선방안 1	130
〈표 4-8〉 개선방안 2	131
〈표 4-9〉 위치정보 수집의 법률적 규제 분석	141
〈표 4-10〉 위치정보 유형별 규제 분석	145
〈표 5-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사업의 분류	217
〈표 5-2〉 위치정보사업의 재분류에 따른 규제차별화 방안	228

그 립 목 차

[그림 2-1] LBS의 변천 (출처: Bellavista, 전계 논문)	13
[그림 2-2] 스마트폰에서 계층 별 LBS 기술	15

[그림 2-3] 스마트폰이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16
[그림 2-4] iNeedCoffee 앱 실행 화면	17
[그림 2-5] 구글 래티튜드 실행 화면	20
[그림 2-6] SK텔레콤의 T맵 실행 화면	21
[그림 2-7] 포스퀘어 실행 화면	22
[그림 2-8] OVJET 실행 화면	23
[그림 2-9] Kayak 실행 화면	23
[그림 2-10] 롯데시네마 앱 실행 화면	24
[그림 2-11] iButterfly 실행 화면	25
[그림 2-12] 그루폰 앱 실행 화면	26
[그림 2-13] 전 세계적인 LBS 시장 규모(예상치 포함)	27
[그림 2-14] 국내 LBS 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28
[그림 2-15] 연도별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건 수	41
[그림 4-1] 위치기반서비스의 정보흐름도	109
[그림 4-2] 사업유형별 규제 내용	132
[그림 4-3]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범위 총괄	136
[그림 4-4] 서비스 유형별 정보의 결합형태	140
[그림 4-5]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방법	149
[그림 4-6] 우리나라의 위치추적을 위한 좌표수집 현황	150
[그림 4-7]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위치정보 저장 방식 비교	152
[그림 4-8]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쟁점	153
[그림 4-9]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수 전망	163
[그림 4-10]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어플리케이션 최신사례	165
[그림 5-1] 소셜데이팅 어플리케이션 개념도	221
[그림 5-2] 위치정보사업 규제 범위	226

요 약 문

1. 제 목

융합시대에 적합한 LBS 사업분류 및 규제체계 연구

(A Study of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of LBS in New Convergence Society)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스마트 모바일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해 주목
- 위치기반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비롯한 신기술서비스가 스마트 모바일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자원이 됨
- 하지만 스마트 폰에 내장된 개인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이용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위치정보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개인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
- 현행 보호 위주의 위치정보 정책을 규정하고 있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을 보완하고,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신고제의 진입규제도 완전 폐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따른 차별적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위치정보사업’ 분류체계를 재정비
- 각국의 위치정보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치정보의 국제성 및 초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규율방안을 수집
- 새롭게 등장하는 위치정보의 유형과 위치정보 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원칙을 도출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각국의 LBS 사업 규제 동향 및 우리나라 사업규제
- 위치정보개념 및 유형의 재정비
- 위치정보사업자의 분류체계
- 위치정보사업자의 규제체계 재정비
- 위치정보사업의 진흥을 위한 고려
-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방안(단기적, 장기적)

4. 연구 내용 및 결과

■ LBS 규제 관련 해외 동향

○ 미국

- 연방통신법에서 옵트-아웃방식의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율
- 최근 몇몇 법안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음
- 옵트-아웃방식의 위치정보보호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미 옵트-인방식이 사회적으로 확립된 우리나라에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함

○ 유럽

- 과거의 ‘개인정보보호지침’ 과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 만이 존재
- 현재까지는 별다른 유의미한 법규범이 없으나 현재 작업 중인 것으로 예상

○ 일본

-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사항만 나열한 상태라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함

■ 위치정보 개념의 재검토

○ 위치정보 개념정의의 명확화

- 법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제2조 1호)
- 집단의 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로 규율
- 개인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상의 보호 필요성
- 위치정보시스템의 개념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명문으로 포함(제2조 8호)

○ 위치정보보호법과 타법과의 관계

- 위치정보보호법이 위치정보에 관한 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특별법의 지위
- 위치정보보호법에 최우선 적용 법률임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행 법조문의 해석으로도 가능함(법제처 심사과정상 이의제기 가능성으로 현행 규정 유지)

■ 위치정보 관련사업의 규제완화

○ 위치정보사업자의 분류

- 단기적 개정방안에서는 현행과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2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 장기적 검토방안에서는 ‘위치정보를 수집’ (제1유형),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제공’ (제2유형),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제3유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장’ (제4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

○ 위치정보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

-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사업자는 허가제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심사를 전제로 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제5조1항)

- 등록심사 사항을 축소하고(제5조 3항), 허가 조건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며(제5조 4항), 사업 양수 및 합병시 등록변경을 하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통제 유지(제7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청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행령과 고시에서 반영)
-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면제(제9조 4항)

■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적 통제 강화

○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강화

- 위치정보 수집 장치 부착물건의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도 구입자에게 고지하거나 물건에 표시를 할 의무 신설(제15조 3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활용실태를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조사할 권한 확대(제16조 3항)
- 위치정보 수집 시 약관의 동의유보를 이유로 위치정보와 직접 관계없는 서비스까지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제18조 2항)
- 최소한의 위치정보수집의 입증책임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환(제18조 3항)

○ 행정벌 강화

-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제14조)
-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제43조 1항),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제43조 2항),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제43조 3항) 각각 상향 조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인프라 구축 산업, SW산업, 콘텐츠 산업 등과 연관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므로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대국민 흥

보강화

- 위치정보의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동시에 신규 사업자의 LBS 사업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방식인 현행 허가·신고제 완화로 사회 전 분야의 경쟁력 제고
-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도출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작업의 완벽한 사전 준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는 한국 사회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손 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 명 시대를 돌파한 지금, 스마트 모바일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핵심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위치기반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비롯한 신기술서비스가 봇물처럼 터져나고 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언제나 암이 있듯이, 위치정보로 인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왔으나 스마트 폰에 내장된 개인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이용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4월 애플은 이용자가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놓았음(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한 것이 밝혀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렇지만 소위 킬러앱이라 불릴 만큼 모바일 시대 산업의 총아로 손꼽히는 위치 정보 서비스 산업들이 위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 버린 네비게이션처럼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단순 위치정보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개인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세계 위치정보 관련 시장은 2007년 5억 1,500만 달러에서 2013년 1,330억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황금시장이다. 따라서 현행 보호 위주의 위치정보 정책을 규정하고 있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을 보완하고,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신고제의 진입규제도 완전 폐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따른 차별적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위치정보 결합 서비스의 등장으로 현재의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두 단계 분류체계의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변화하는 위치기반서비스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자 분류체계를 통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수집, 동의,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부분은 절차로서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이 강하고 보관, 저장, 제공, 파기 등에서는 시큐리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접근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이 법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원칙과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준수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잘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각국의 위치정보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치정보의 국제성 및 초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규율방안을 수집함에 목적이 있다. 각국의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보호법이 2005년 전면 시행되어 법적 완결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인 동시에 급한 기술발달과 사회변화로 인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위치정보기술 및 이와 관련한 법적 규율은 국제적 및 초지역적 특성을 가지므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EU 등의 법적 규율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우리 위치정보보호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이 요구된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위치정보의 유형과 위치정보 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원칙을 도출함에 목적이 있다. 현재 위치정보+SNS, 위치정보+게임, 위치정보+광고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위치정보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위치정보 활성화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화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위치정보 기술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방향을 모색해봄과 동시에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등 위치정보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보호원칙을 개발하여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발전 모습,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한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미국, EU, 일본 각국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위치정보 개념과 유형, 크게 2가지로 검토한다. 우선, 개인정보의 관계를 통해 현행 위치정보의 개념을 도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위치정보보호법과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의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유형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나누어 각 유형의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위치정보 유형 및 규제의 추상성, 규제 강도조절의 필요성, 제3자 양도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 사업규제의 변화에 따른 행위규제 방식의 재검토,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규제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시 방통위의 허가를, 후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요하고 있는 사업 분류체계와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문제점을 토대로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신고제, 사업자의 각종 의무와 처벌 등 사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의 진흥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해본다. 단순위치정보와 같이 사물에 관한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전동의요건을 완화시키고 개인의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사물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위치정보 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위치정보사업의 진흥을 유도한다.

제5장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의 개선을 위해 위치정보보호법의 단기적 개정방안과 장기적인 검토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인 개정방안은 위치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재 설정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위치 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제의 규제에 대한 완화의 방안을 제시한다. 덧붙여, 정부의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단말기나 OS 사업자들도 위치정보사업자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그 외 위치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규율에 비추어 민감한 개인정보로서의 위치정보의 강한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장기적인 검토방안으로는 우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완전 철폐보다는 규제완화의 사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사업의 형태로 1 유형에서 4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규제 방법을 개정하고 단계적 규율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검토방안은 향후의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의 위치정보보호법의 전면적 개정에 대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제3절 연구의 활용

본 연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위치정보 기술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방향의 제시로 위치정보의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로 사회 전 분야의 경쟁력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우리 IT 기술과 문화의 선진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개인위치정보만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로 규정하고 사물위치정보는 제외하여 위치정보보호의 개념을 수정한다. 또한 위치정보보호법이 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과의 관계를 밝히며 위치정보가 가장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타법보다 강한 보호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정보와 관련 사업의 규제를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와 각각 허가·신고제의 완화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작업의 완벽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LBS 사업 및 규제 동향

제1절 LBS 사업 동향

1. LBS의 개념

LBS(Location-Based Service; 위치정보서비스)는 개체에 대한 지리적 정보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개체”는 지리 정보의 대상으로서 사람일 수도 혹은 사물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야 방지를 위한 LBS에서 그 지리 정보의 개체는 아동이지만, 다른 한편 물류 회사가 소포에 RFID 등을 부착하여 그 소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때에는 사물이 지리 정보의 개체가 된다.¹⁾

2. LBS의 발전 모습

가. LBS의 역사

LBS의 역사는 1996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 발표한 “E911 명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는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한 사람의 위도와 경도를 자동으로 파악해 긴급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유럽에서도 200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미국의 E911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휴대 통신에 대한 명령” (Directive for Mobile Communication)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LBS의 초기 모습은, 사용자에게 부가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긴급 구조 활동 등을 돕기 위해 정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일정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령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 Iris A. Junglas, “Location-based service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1 No. 3, pp. 65-69.

정부의 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던 통신사업자들은 그 막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LBS의 상업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시작된 서비스가 “인근 정보 검색” (finder service)이었다. 하지만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까이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주요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당시 위치 정보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다. 휴대폰 기지국만을 이용(휴대폰과 주위 복수의 기지국 간의 신호 세기를 계산하여)해 위치를 추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²⁾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2005년이 되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GPS가 내장된 휴대폰의 등장, 웹2.0 패러다임의 시작, 3세대(3G) 통신망의 운영 등 모든 환경이 LBS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³⁾ GPS 덕분에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얻어진 위치 정보는 웹2.0에서 요구되는 콘텍스트 아이템(context item)이 되었다. 예를 들어, 웹2.0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휴대폰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사용자가 SNS에 늘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존보다 훨씬 빠른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해 준 3G 통신망 덕분이다.

나. 변화의 특징

2005년에 나타난 새로운 환경 변화 덕분에, LBS는 기존에 수동적인(reactive) 서비스에서 능동적인(proactive) 서비스로 탈바꿈하였다. 수동적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하게 요청을 해야 작동하였다. 하지만 능동적인 서비스는 사전에 정해놓은 설정에 따라 LBS가 먼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자는 사용자가 특별하게 이 주위에 이탈리아 레스토랑 정보를 요청하면 그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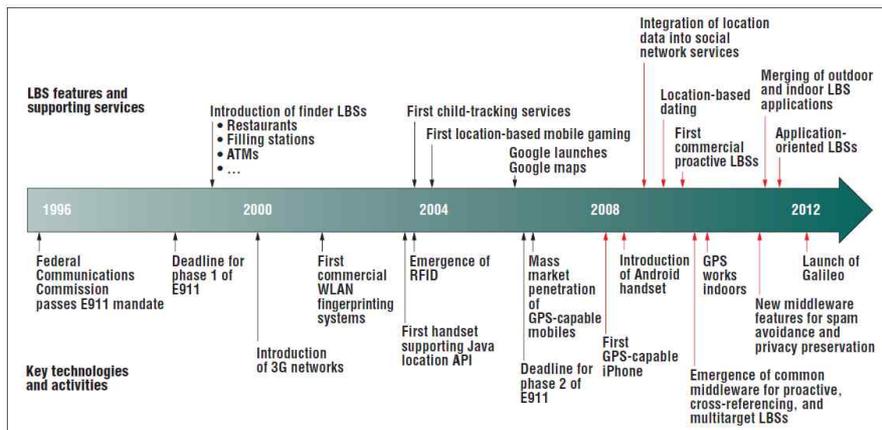
2) *ibid.*, pp. 65-69.

3) Paolo Bellavista, “Location-Based Services: Back to the Future” , *IEEE Pervasive computing*, Vol. 7 Issue 2, pp. 85-89.

야 검색을 시작해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반면 후자에서는 사용자가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면 LBS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그 레스토랑의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위의 예에서 오늘날 능동적인 LBS에서는, 레스토랑이 먼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대한 선호가 있는 휴대폰 사용자에게 자신의 레스토랑 정보 및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LBS에서는 LBS를 활용하는 자와 LBS의 대상이 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위 예에서는 자신의 레스토랑 정보를 자신의 레스토랑 주변을 지나는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레스토랑 업주가 LBS를 활용하는 자가 된다. 반면 이 업주를 위한 LBS에서 위치 정보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근처를 지나가는 휴대폰 사용자가 된다. 이렇게 LBS를 활용하는 자와 LBS의 대상이 되는 자가 다를 수 있게 된 것이 오늘날 LBS의 특징이며, 이를 “교차 참조”(cross-referencing) 방식이라 부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의 LBS는 모두 LBS를 활용하는 자와 LBS의 대상이 되는 자가 동일한 사용자였던 “자기 참조”(self-referencing) 방식이었다.

[그림 2-1] LBS의 변천 (출처: Bellavista, 전개 논문)



또한 과거의 LBS가 “콘텐츠 중심”(content-oriented)이었다면 오늘날의 LBS는 “애플리케이션 중심”(application-oriented)이다. 전자의 방식은 웹 브라우저는 문

자 메시지 등 범용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후자는 특수한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용자에게 대해서 위치 정보를 비롯한 사용자 환경을 분석해 특정한 사용자만을 위한 보다 맞춤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1〉 피쳐폰과 스마트폰 각 환경에서의 LBS 특성 비교

	피쳐폰 환경	스마트폰 환경
서비스의 주체	이동통신사	사용자/개발자
플랫폼 개방 여부	비개방	개방
서비스 종류	제한적	다양함
기술 통제	쉬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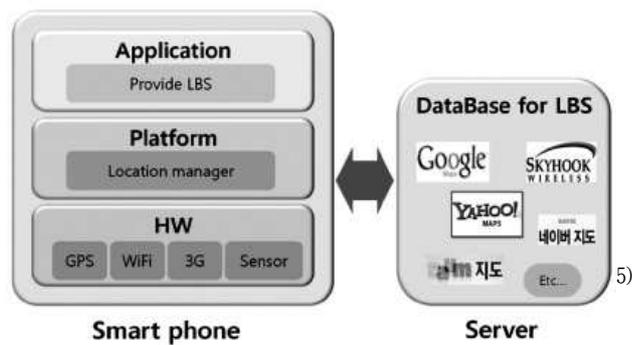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오늘날 LBS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의 주도권이 통신사업자에서 사용자에게로 넘어갔다(user centricity)는 것이다. 과거에는 통신사업자가 LBS를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소유하였다. 이용자 및 그들의 무선기기는 어디까지나 통신사업자 주도의 LBS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이용자의 위치는 오직 통신사업자만이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GPS, Wi-fi, 블루투스, 적외선 통신 등의 등장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기기만으로도 자신의 위치 정보를 얻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LBS 이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보다 거부감 없이 LBS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위치 정보에 대한 중심이 이용자로 넘어가게 되자,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LBS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들웨어(middleware)가 등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Google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code.google.com/android)와 Linux의 Openmoko 프로젝트(www.openmoko.org)이다. 이들의 등장이 결국 오늘날 LBS 시장의 지축을 바꾸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쉽게 잘 정의해 놓은 명령어를 통해 중소 애플리케이션 제조사들은 LBS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봇물처럼 내놓게 된 것이다. 미들웨어란 도구를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제조사들은 특별하게 고도의 기술이 없이도 LBS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⁴⁾

3. LBS 관련 기술

LBS 기술은 개인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의 기술과 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에서의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의 기술은, 또 다시 측위 하드웨어 단(layer), 플랫폼(platform) 단, 응용 프로그램(앱) 단으로 계층화된다.

[그림 2-2] 스마트폰에서 계층 별 LBS 기술



4) Bellavista, *supra* note, pp. 85-89.

5) 정구민 외, “스마트폰에 따른 LBS 패러다임 변화 및 서비스 동향”, 정보와 통신, 2011년 6월, 60쪽.

오늘날 스마트폰에서는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GPS, WiFi, 휴대폰 이동통신망, 기타 센서 등을 모두 활용한다. 기존에 휴대폰 이동통신망만을 가지고 위치를 측정하던 때에는 달리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다. 덕분에 측정되는 위치의 오차도 많이 줄게 되었다. 이를테면, WiFi를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은 GPS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정확하다. 또한 WiFi 방식은 특히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에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3] 스마트폰이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플랫폼 단은 앞서 살펴본 위치를 측정하는 하드웨어와 위치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위치를 측정하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응용프로그램이 현재 위치를 요청할 경우 측위 하드웨어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준다.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플랫폼을 통해서 얻은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체이다. 요즈음은 단순히 LBS 그 자

6) 정구민 외, 전계논문, 61면.

체 기술뿐만 아니라, 증강 현실,⁷⁾ 음성 인식 기술 등과 결합하여 그 서비스의 내용을 고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커피숍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LBS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주위 커피숍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그 사진에 커피숍 위치를 표시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iNeedCoffee 앱이다.

아울러 응용 프로그램은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LBS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구글은 자신의 지도 및 길 찾기 서비스에 음성 인식 기능을 더하여, 음성을 통해 지도를 찾거나 길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⁸⁾ 운전 중인 이용자가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음성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그림 2-4] iNeedCoffee 앱 실행 화면



7) 실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으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실세계 환경과 그래픽 형태의 가상 현실을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실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기술을 말한다. 스포츠 중계 시 등장하는 선수가 소속된 국가의 국기나 선수의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8) 구글 공식 블로그(<http://googlemobile.blogspot.com/2009/06/search-by-voice-and-transit-directions.html>)

4. LBS 활용 분야

LBS는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LBS의 시초가 그러하였듯이 국가는 긴급 구조를 위해 요구조자(要救助者)의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의 활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물류회사에서의 활용이다. 물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송물이 지금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어디로 이동 중인 지에 관한 정보이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물류회사는 보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일반 상점에서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손님의 휴대폰에 할인 쿠폰을 전송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모바일 광고를 통해 사업자는 광고의 타겟을 매우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LBS의 가장 중요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용자 간에도 LBS는 이용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 친구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유아나, 노부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호자가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사용자간의 특정인의 위치파악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또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길 안내, 최단 경로 찾기 등 서비스도 현재 상용화되어 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서비스들의 분류를 보여준다.

<표 2-2> 위치 정보 서비스의 유형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위치정보의 활용현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탁 과제 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 정확도
일반 사용자 대상	안전 및 구난 서비스	구조요청, 가족안전위치서비스	10~50m
		기상예보	200km
	주변정보 서비스	상점, 엔터테인먼트 시설, 차량 관리 시설, 숙박 시설 정보	75~125m
	추적 서비스	친구, 가족 찾기, 유명인 찾기	500m~1km
	교통, 항법 서비스	최단경로, 구간속도, 교통노선 정보 제공	1km
	광고 및 상거래 서비스	할인쿠폰, 티켓예매, 광고 상거래	75~125m
기업 사용자 대상	안전 및 구난 서비스	현장 노동자 응급 서비스	10~50m
	주변 정보 서비스	-	75~125m
	추적 서비스	차량 위치 추적 (렌트카, 화물)	75~125m
		영업사원 위치 파악 및 관리	500m~1km
	교통, 항법 서비스	화물차량 항로 제공	10~50m
	광고 및 상거래 서비스	-	75~125m

아래에서는 각 서비스 유형 별로 널리 쓰이는 LBS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서 LBS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 사용자 검색 앱

구글의 래티튜드(Latitude) 앱은 지인들끼리 서로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쌍방이 모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구글 맵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보여준다. 또한 알림(알람) 기능을 설정해놓으면, 등록된 지인이 사용자 주변에 왔을 때 그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림 2-5] 구글 래티튜드 실행 화면



나. 내비게이션 앱

내비게이션 앱은 사용자가 원하는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의 길을 안내해준다. 이때 길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최단 거리, 최소 비용(도로 이용료 등을 계산하여) 등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여 알려준다. 그리고 3G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내려받아, 도로 체증 실시간 상황까지 고려하여 가장 최적화된 경로를 계산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길찾기 서비스가 주였지만 요즘은 자전거나 도보를 위한 경로를 알려주기도 한다. 내비게이션 앱은 그 제공하는 회사가 많으나 서비스 내용은 비슷하다. 대표적으로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T맵이 있다.

[그림 2-6] SK텔레콤의 T맵 실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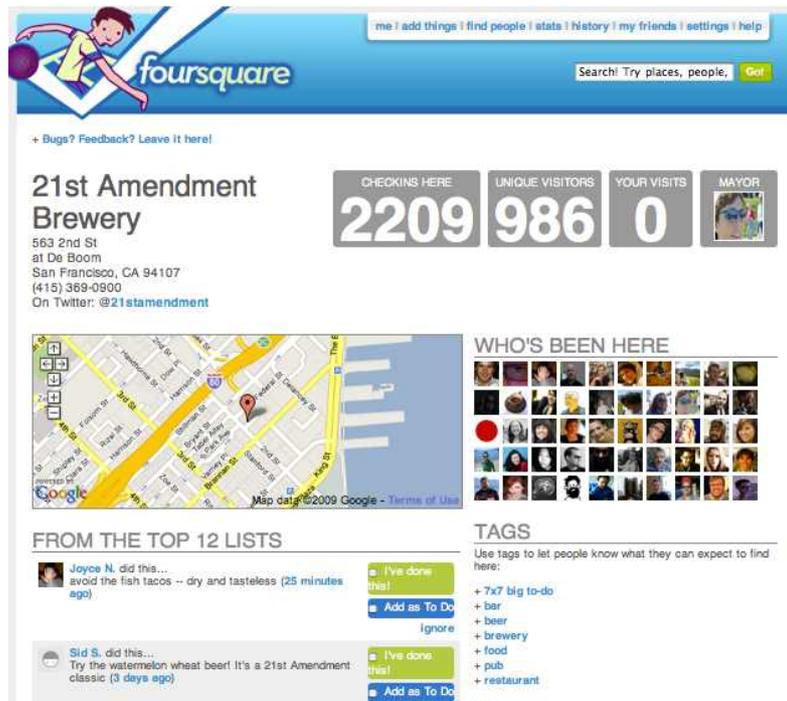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포스퀘어(Foursquare)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와 LBS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특정 장소에서 “체크인”을 할 수 있다. 체크인을 많이 한 사용자는 포스퀘어 내에서 사용자 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면 해당 장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권한도 주어진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위치 정보와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친교를 다진다.

[그림 2-7] 포스퀘어 실행 화면



라. 증강서비스 앱

OVJET 앱은 LBS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현 위치에서 사진을 찍으면 현재 위치의 사진에다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표시해준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명동 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거리 사진에 유명한 식당들의 위치가 표시된다. 그 식당 아이콘을 누르면 그 식당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이전에 이용했던 사람들의 평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OVJET 실행 화면



마. 여행 정보 제공 앱

전세계적인 여행 정보 제공 사이트인 Kayak은 LBS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현재 위치에서 호텔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된 정보는 지도 위에 바로 나타난다. 이용자는 지도를 보고 호텔의 위치와 아울러 숙박비, 호텔 등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호텔을 쉽게 결정하고 예약할 수 있다.

[그림 2-9] Kayak 실행 화면



바. 영화 예매 앱

롯데시네마는 LBS를 이용해 영화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시네마는 전국에 수 십 개의 영화관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예매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영화관을 컴퓨터 또는 휴대폰 상에서 직접 지정한 후 영화를 예매해야 했다. 하지만 LBS가 적용된 롯데시네마 앱은 현재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관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이용자가 이전에 들여야 했던 수고를 덜어준 것이다. 아울러 선택한 영화관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2-10] 롯데시네마 앱 실행 화면



사. 게임 앱

iButterfly는 SNS와 증강 현실 기술 모두를 활용한 게임 앱이다. 이용자가 본 앱을 통해 카메라를 켜면 이용자의 실제 주위 사진 속에 나비가 뜬다. 이용자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 나비를 잡는 게임이다. 나비가 표시된 곳으로 가서 휴대폰을 잡고 나비를 낚아채는 행동을 취하면 점수를 얻게 된다. 이전의 게임은 오직 가상 현실에서만 이루어졌으나, SNS를 이용한 게임은 실제 현실과 가상 현실의 접점에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iButterfly에서는 이렇게 나비를 잡으면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림 2-11] iButterfly 실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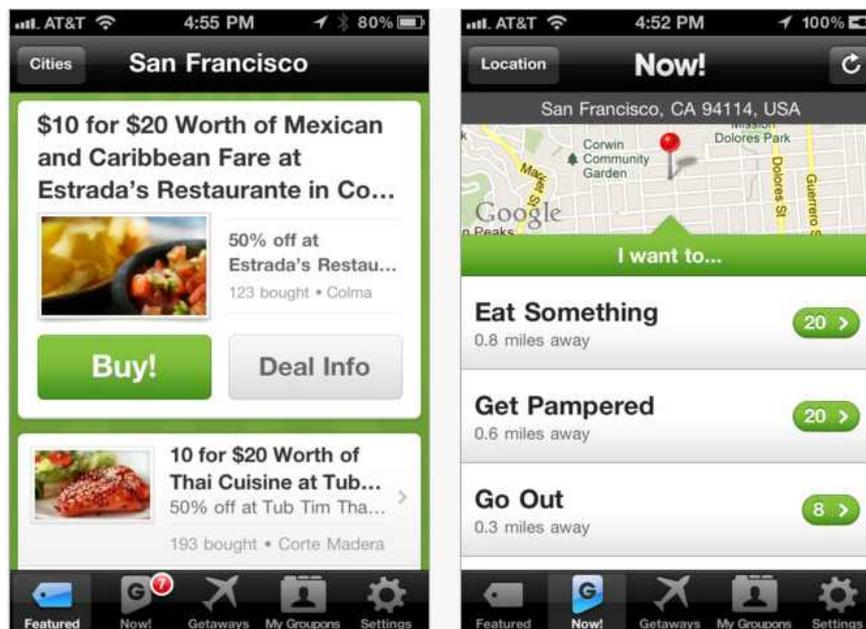


아. 광고 앱

그루폰(groupon)은 소셜커머스 서비스에 LBS를 적용하였다. 소셜커머스는, SNS를

통해서 상품 홍보를 하고 일정 이상의 고객 수가 확보되면 할인가로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소셜커머스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SNS를 이용하는 것이다.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 SNS를 통해 광고를 퍼나르는데, 이를 통해 광고주는 광고 효과를 얻게 되고, 이용자는 할인가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LBS를 결합하여, 이용자가 그루폰 앱을 켜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용자 주위에서 할인가로 제공되는 식당 등의 목록을 보여준다. 식당이 이용자가 지금 바로 들릴 수 있는 근거리이 있으므로,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구매를 실제적으로 유인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림 2-12] 그루폰 앱 실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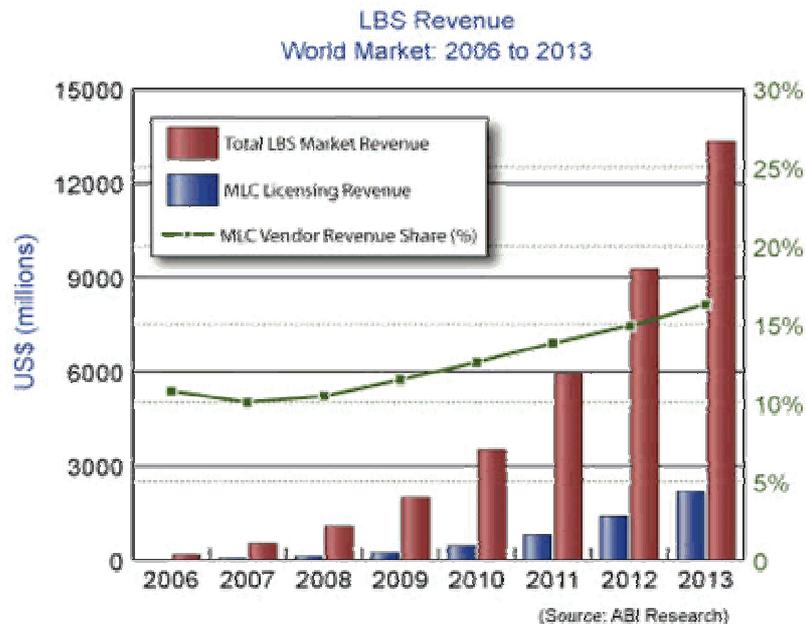


5. LBS 산업 규모

LBS는 IT 산업에 있어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이 될 거라고 산업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것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 5년 동안 아시아 내 LBS 시장은 2006년 2억 9천 1백 만 달러에서 2010년 4억 4천 7백 만 달러로 거의 2배가 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1억 9천 1백 만 달러에서 6억 2천 2백 만 달러로,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에서 3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에는 한국, 일본 등 기술 수준도 높고 또 그것을 커버할 국토의 크기가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LBS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서비스들이 더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다.⁹⁾

[그림 2-13] 전 세계적인 LBS 시장 규모(예상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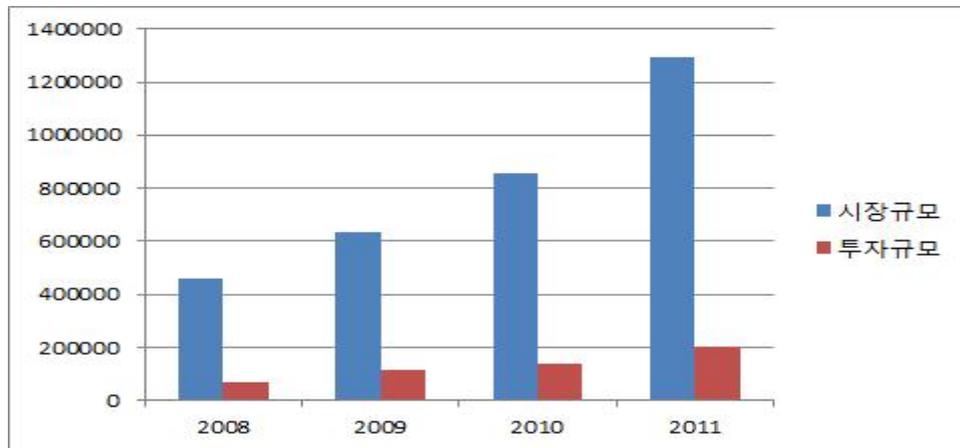


한편 기업서비스의 비중은 2008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B2C

9) Junglas, *supra* note, pp. 65-69.

분야의 서비스들이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주변 정보 서비스와 친구 찾기, 가족 안심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2-14] 국내 LBS 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국내에서도 LBS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3G 휴대폰이 보급되기 이전에 국내 LBS 시장 규모는 4천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3G 휴대폰 이용자가 늘면서 LBS 시장 규모도 2009년에는 6천억 원, 2010년에는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1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2008년의 7백억 원 규모에서 2011년의 2천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확대되었다.¹⁰⁾ 스마트폰 및 인터넷이 보급되어 이용자 수가 보장되고, 작은 국토 환경에서 LBS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용이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LBS의 시장 매출과 투자 규모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박찬휘 외, “LBS 시장과 산업의 동향 및 전망”, TTA Journal, No. 123,66면.

제2절 각국의 LBS 사업 규제 동향

1. 미국

가. 1996년 연방 통신법

미국은 「1996년 연방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 1996)」 제222조에서 통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객의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통신망정보(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는 법률의 규정 혹은 이용자의 동의(approval)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통신 고유의 목적을 위해 수집되는 고객의 위치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 서비스 제공 목적 하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외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활용은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용자의 “동의(approval)”의 해석에 있어 미국 내 논란이 있었다. 즉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옵트-인 방식) 아니면, 이용자의 거부 없으면 그 때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지(옵트-아웃 방식)의 논란이 있었다.¹¹⁾ 이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애초 이를 옵트-인 방식이라고 해석하였지만,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여 옵트-아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옵트-인 방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다.¹²⁾

위 법률은 위치 정보를 규율하는 미국 내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11) 전형적인 옵트-인 방식이 개인정보의 수집인 반면, 전형적인 옵트-아웃 방식이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이다. 스팸메일을 보낼 때 먼저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내는 것은 허용하되 반드시 향후 거절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12)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1, 10면.

하지만 해당 법률은 위치 정보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니다. 이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부수되어 수집되는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일 뿐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위치정보만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최근 법률 안

미국은 과거 위치정보와 관련된 수차례의 입법 시도(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1 등)가 있었으나 전부 무산된 바 있다. 단지 긴급구조와 같은 공익적 목적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1999년 무선통신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 (Wireless Communica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에 네트워크 상 개인정보 수집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2010년 5월에 미국 하원 통신기술인터넷 소위원회 위원인 Rick Boucher와 Cliff Stearns 의원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1년 2월에는 Speier 의원이 또 다시 비슷한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였다. 이들 법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며, 또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성문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Boucher 의원 안

Boucher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은 보호 정보(covered information)와 민감 정보(sensitive information)로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는 개인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 번호, 생체 정보, 정부가 발행한 인식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을 포함된다. 후자에는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은행 기록 등과 함께 개인의 정확한 지리정보(precise geolocation information)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사업자 정보, 수집되는 정보, 수집 방법, 다른 정보와의 결합 여부, 수집된 정보의 보관 기관 등을 포함한 공지(privacy notice)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본 법에서는 이러한 이용자의 동의에 있어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해당 법안은 대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옵트-아웃 방식이지만 이용자가 거절(옵트-아웃)하게 되면 그 거절 시점을 불문하고, 이용자의 거절 이전에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감정보에 있어서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원칙적으로 옵트-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정보 판매, 공유, 공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설사 이용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사후에 언제든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 Rush 의원 안

한편 2010년 7월 19일에는 Bobby Rush 의원이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였다.¹³⁾ 이는 앞서 살펴본 Boucher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하게, (1) 일반적으로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한 고지만이 요구된다.¹⁴⁾ 이때 고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다.¹⁵⁾ (2) 하지만 옵트-아웃 방식으로서 이용자가

13) http://www.house.gov/list/press/il01_rush/pr_110211_hr611.shtml

14) SEC. 102. PROVISION OF NOTICE OR NOTICES. (a) In General- It shall be unlawful for a covered entity to collect, use, or disclose covered information or sensitive information unless it provides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section 101 in concise, meaningful, timely, prominent, and easy-to-understand notice or notice s...

15)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정보

언제든지 정보 수집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3) 더 나아가,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수집하려는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¹⁶⁾

한편 Rush 안에서 새롭게 규정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Rush 의원 안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피해자는 가해 사업자에 대해, 1천 달러 범위 한도에서 실손해배상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¹⁷⁾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사업자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공개 청구 방법 ▲수집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지 여부 ▲정보 수집 주기 ▲사업자의 정보 수집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 고지할 방법 ▲이용자가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그 내용이다. (SEC. 101. INFORMATION TO BE MADE AVAILABLE)

- 16) SEC. 104. EXPRESS AFFIRMATIVE CONSENT. (a) Disclosure of Covered Information to Third Parties-(1) DISCLOSURE PROHIBITED-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06 and subject to title IV of this Act, it shall be unlawful for a covered entity to disclose covered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to a third party unless the covered entity has received express affirmative consent from the individual prior to the disclosure. (b) Collection, Use, or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06, a covered entity may not collect, use, or disclose sensitive information from or about an individual for any purpose unless the covered entity obtains the express affirmative consent of the individual.
- 17) SEC. 604. PRIVATE RIGHT OF ACTION (a) A covered entity, ..., who willfully fails to comply with section 103 or 04 of this Act with respect to any individual is liable to that individual in a civil action brought ... in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1) the greater of any actual damages of not less than \$100 and not more than \$1,000; (2) such amount of punitive damages as the court may allow; (3) in the case of any successful action under this section, the costs of the action together with reasonable attorney' s fees. (b) A civil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commenced lather than 2 years after the date upon which the claimant first

둘째, 옵트-인 규정에 예외 규정(세이프-하버 규정; Safe-Harbor provision)을 두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옵트-인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FCC의 자율 규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옵트-인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초이스 프로그램(Choice Program)이라고 명명된 이 자율 규제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옵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경우 FCC의 심사에 따라 당해 프로그램 참여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본 허기는 매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¹⁸⁾

다. Spier 의원 안

미국 하원의 Speier 의원은 2011년 2월 11일에 일명 온라인 추적 금지법(Do Not Track Me Online Act)를 제안하였다. 최근 아이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자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이 법안 역시 기본적인 사항은 위 두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특히 LBS와 관련해서는 지리 정보를 민감 정보에 포함하였다.¹⁹⁾ 다만, 이 법은 행정기구 즉,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discovered or ha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discover the violation.

18) SEC. 401. SAFE HARBOR covered entity that participates in, and is in compliance with, 1 or more self-regulatory programs approved by the Commission under section 402 (in this title referred to as a ‘Choice Program’) shall not be subject to (1) the requirements for express affirmative consent required under subsection 104(a) for the specified uses of covered information addressed by the Choice Program as described in section 403(1)(A); (2) the requirement of access to information under section 202(b); or (3) liability in a private right of action brought under section 604.

19) SEC. 2. DEFINITIONS. (4) SENSITIVE INFORMATION- (A) DEFINITION- The term ‘sensitive information’ means--(i) any information that is associated with covered information of an individual and relates directly to that individual’ s ... (VI) precise geolocation information and any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s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such geolocation.

Commission, FTC)에 여러 가지 행정상 의무 및 권리를 규정한 점이 독특하다.

먼저 FTC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이면서도 쉽게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방식의 기준(standard)을 설정해야 한다.²⁰⁾ 아울러 FTC는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 요소를 감시(monitoring)하고, 정보 수집 사업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random audit)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의 정보 수집에 대한 위협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²¹⁾

라. 검토

미국에서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적절한 규제가 오랫동안 없었다. 이에 많은 소비자단체들이 입법 운동을 벌였고, 최근에서야 위 법안들이 제시

20) SEC. 3. REGULATIONS REQUIRING ‘DO-NOT-TRACK’ MECHANISM. (a) FTC Rulemaking- ... the Commission shall promulgate regulations under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that establish standards for the required use of an online opt-out mechanism to allow a consumer to effectively and easily prohibit the collection or use of any covered information and to require a covered entity to respect the choice of such consumer to opt-out of such collection or use.

21) SEC. 4. ADDITIONAL FTC AUTHORITY. In implementing and enforcing the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section 3, the Commission shall--(1) have the authority to prescrib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in accordance with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2) monitor for risks to consumers in the provision of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ew hardware or software designed to limit, restrict, or circumvent the ability of a consumer to control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 covered information of such consumer, as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section 3; (3) perform random audits of covered entities, including Internet browsing for investigative purpos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section 3; (4) assess consumers’ understanding of the risks posed by the tracking of a consumer’s Internet activity and the collection and use of covered information relating to a consumer.

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산업의 진흥과 개인의 정보 보호를 모두 고심한 결과물이라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안들의 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의 원칙을 옵트-아웃으로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²²⁾ 따라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그 보호받는 개인정보 중 위치정보는 더욱 특별하게 보호받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입법부 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상원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John Kerry와 John McCain 상원 의원이 2011년 4월 12일 “2011 상업상 프라이버시 권리법” (The Commercial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1)을 제안하였다.²³⁾ 이렇게 여러 명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입안한 점을 보았을 때, 온라인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널리 인식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방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것 가능성도 엿보인다.

2. EU

가.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

EU는 1995년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²⁴⁾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EU의 전 회원

22) 이 점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법규가 예외없이 옵트-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여론으로서는 옵트-아웃 방식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점에서는 미국의 입법 동향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23) <http://kerry.senate.gov/press/release/?id=59a56001-5430-4b6d-b476-460040de027b>.

24)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국이 따라야 할 지침으로서,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해당 지침 제4조). 해당 지침의 특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기본권 보장으로 본 것이다(전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1980년에 OECD가 권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7가지 원칙을 모두 수용했다.²⁵⁾ 그리고 해당 지침의 내용은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의 법적 의무임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정보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제23조 제1항). 특히 입증책임을 개인정보관리자에게 부과하여(동조 제2항),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나.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

이후 EU는 2002년에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전자통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²⁶⁾ 해당 지침은 위치정보를 법적으로 처음 정의 내렸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이는 위치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 장비의 위도, 경도 및 고도, 여행의 방향, 위치 데이터의 정확도의 수준, 단말기 장비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 네트워크 셀(cell)의 확인, 위치 데이터가 기록된 시간 등”으로 정의하였다(전문 (14)).

그리고 이러한 위치정보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각각 규제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침은 위치정보를 ① “전송 정보”(traffic data)로서의 위치정보와 ② 전송 정보가 아닌 위치정보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전송 정보란 통신을 위하여 기계가 일시적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25)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26)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으로 수집·저장하는 정보를 뜻한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²⁷⁾ 반면, LBS 등 부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집되는 위치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9조). 이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은 앞서 제정된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따른다.

다. 검토

EU는 위치정보만을 위한 법률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또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치정보를 보호받는 개인정보로서 정의내리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상 좋은 입법례라 생각된다. 다만, 위치정보의 특성상 그 처리자들의 영업을 사전에 허가, 신고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EU 차원에서의 입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치정보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규정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통신 중에는 단말기나 그와 통신하는 근처의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입법례이기 때문이다.

3. 일본

가.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은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

27)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또는 그들의 동의 없이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전송 정보(traffic data)의 저장 금지는 이것이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전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발생하고, 만약 정보가 전송과 통신 관리 목적에 필요한 것보다 장시간 저장되는 것이 아니며, 저장의 기간 동안 비밀이 보장되는 한, 이러한 정보의 자동적, 중간적 및 일시적 저장을 금지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전문 (22)).

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나, 재판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제3자로의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제26조).²⁸⁾ 한편 같은 가이드라인 제26조의2는 전기 통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나. 검토

일본의 규정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LBS를 규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먼저 내용적으로는,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的内容이 분명하지 않다. 제2항에서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즉, 이는 이용자로부터 위치정보 활용의 동의를 받을 때 그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먼저 고지(informed)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혹은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위치정보사업자 혹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 설사 이를 해석을 통하여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만약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고지가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혹은 후자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적인 보호 조치의 정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식적으로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6조³⁰⁾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제정한 명령 내지 규칙이다. 이러

28) 원문은 다음과 같다. “電気通信事業者は、利用者の同意がある場合、裁判官の発付した令状に従う場合その他の違法性阻却事由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位置情報(移動体端末を所持する者の位置を示す情報であって、発信者情報でない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他人に提供しないものとする。”

29) 원문은 다음과 같다. “電気通信事業者が、位置情報を加入者又はその指示する者に通知するサービスを提供し、又は第三者に提供させる場合には、利用者の権利が不当に侵害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30) “정부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이용 방법에 비추어, 개인의 권리 이익의 추가 보호

한 행정청의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나마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이 떨어지고, 사후 제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일본은 아직까지 LBS를 법적으로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적정한 취급의 엄격한 실시를 확보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한다(政府は、`個人情報`の性質及び利用方法にかんがみ、`個人`の権利利益の一層の保護を図るため特にその適正な取扱いの厳格な実施を確保する必要がある`個人情報`について、`保護`のための格別の措置が講じられるよう必要な法制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3절 우리나라의 LBS 사업 규제

1. 관련 법률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최초의 독자적인 법률은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1995년에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된 바 있다.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 신용정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먼저 있었던 것이다.

이후 통신 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문제가 불어지자 1999년에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을 규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은 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기능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이와 구분되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위치정보보호법”이 별도로 입법되었다. 여기에서는 위치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업 기반을 진흥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제5조가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이하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위치정보 중에서도 개인위치정보는 더욱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

한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있어서는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9조에서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법 제33조 이하에서는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본 법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위치정보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와 같이 개별적인 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있었을 뿐,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 입법으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11년 9월 30일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2. 사업 규제 현황

스마트폰에서의 LBS 앱의 수가 증가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1분기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규 신고가 95건에 달해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그 수가 증가했다.³¹⁾

[그림 2-15] 연도별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건 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31)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kcc1335/3411>)

이러한 산업계의 움직임에 따라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에게 관련 제도를 미리 교육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LBS 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³²⁾

하지만 LBS 업계는 관련 법 규정 및 정부의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다. LBS를 제공하고 있는 씨온의 안병익 대표는 “현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피쳐폰 시절인 2005년에 만든 법률이라 지금과 맞지 않는다”면서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³³⁾ 안 대표와 같이 산업계에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위치정보사업자는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따라 인·허가 제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LBS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프라임경제 신문의 이욱희 기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배포 등을 통해 범죄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도둑은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스토커질’하기도 손쉬워질 수 있다. 이밖에도 악용될 수 있는 예는 무궁무진하다.”면서, “서비스들이 타의에 악용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장치는 후속조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며 LBS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³⁴⁾

32) 전자신문 온라인 판(<http://www.etnews.co.kr/201104210199>)

33) 이코노미리뷰 온라인 판(<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1012804482592758>)

34) 프라임경제 온라인 판(<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71>)

제3장 위치정보의 개념 및 유형의 재정비

제1절 위치정보 개념의 재검토

1.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개념

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제기되는 개인의 정보보호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요즘 사회는 바야흐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천만 명을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편리한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기술을 활용하여야 진정 ‘스마트’ 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시당하는 기분이나, 자유를 빼앗긴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러한 기분은 곧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 위치정보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역기능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의 역기능을 적절히 차단하면서 위치정보 관련서비스가 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지적된 애플의 위치정보 저장 사건은 스마트 모바일 사회가 가져올 부

정적 측면을 단적으로 환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신기술 서비스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며 프라이버시 노출과 침해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위치정보 수집에 관련된 개별적인 쟁점들을 명확히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위치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명확히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현재의 위치정보보호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현재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타 법과의 비교

가) 수범주체 및 보호대상

① 규정의 의미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주체로(제5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개인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제1호) 보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수범

주체로(제3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제6호) 보고 있다.³⁵⁾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절에서는 각 법률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므로 개인정보 이외의 부분은 다루지 아니한다.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을 수범주체로 하며 그 보호대상으로 제2조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는 “위치정보”와 그 중에서 특별히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모두 수범주체와 보호대상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특히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35)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절에서는 각 법률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므로 개인정보 이외의 부분은 다루지 아니한다.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b) 차이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수범주체와 보호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넓은 시각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치정보보호법은 우선 수범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수집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와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또는 수집동의) 없이도 타인에 의한 임의수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수범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개인에 관련된 “개인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과의 관련성이 낮은 “위치정보” 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나) 수집주체의 수집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a) 개인정보 수집 경우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b)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고지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c)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서 나열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집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증명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b) 정보통신망법

a) 개인정보 수집 경우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b)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고지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불공정 약관과 같이 동의내용의 부당성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고객정보 활용을 예측하여 단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여 가능한 이용범위를 넓혀 동의를 받고 있다.

c)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을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c) 위치정보보호법

a) 개인위치정보 수집 경우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위치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위치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c)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제한

수집주체의 수집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제한을 위치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a)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위 법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에 각각 정보주체, 이용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동의는 단순 동의가 아닌, 별도로 각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b)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각각 정보주체 및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위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두 법은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한에 있어서는 수집하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재화 또는 서비스 및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차이점

a)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b)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는 제한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다)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a) 개인정보의 이용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b) 제3자 제공 경우

이용 및 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c) 이용의 제한

이용 및 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경우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d) 제공의 제한

이용 및 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의 제한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제3자 및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이용, 제공 제한의 예외

이용 및 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의 예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더불어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b) 정보통신망법

a) 개인정보의 이용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수집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b) 제3자 제공 경우

이용 및 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의 모든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c) 이용의 제한

이용 및 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을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c) 위치정보보호법

a)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을 위치정보보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b) 이용 및 제공 제한의 예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제한의 예외를 위치정보보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a)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이용 경우, 제3자 제공경우,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다.

b)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동의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제공 시, 그에 따른 고지와 동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지내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c)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를 둬으로써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거나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 차이점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일하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의 제한을 제3자뿐 만 아니라 국외의 제3자에게도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제공 제한의 예외로써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제3사업자의 이용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제3사업자의 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정보통신망법

제3사업자의 이용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위치정보보호법

a) 제3사업자의 이용

제3사업자의 이용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제3사업자의 제3자 제공

위치정보보호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 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은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 개인 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주체, 이용자 각각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b) 차이점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9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

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3자 제공시 상세한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마) 사업의 양도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a)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b) 영업양수자등의 의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영업양수자등의 의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미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영업양수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간주하여 이전 당시의 본래 목

적으로만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b) 정보통신망법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의무

사업의 양도의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의무를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b) 영업양수자등의 의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영업양수자등의 의무를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전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c) 위치정보보호법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은 자의 의무를 위치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

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자한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a)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전받은 영업양수자등,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은 자는 각각 정보주체, 이용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b)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수범주체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 및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b) 차이점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영업양수자등의 의무에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바) 수집정보의 파기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a) 파기 사유 및 예외

수집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파기 사유 및 예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파기 시

수집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파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어 개인정보를 파기 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정보통신망법

수집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파기 사유 및 예외를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및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동의를 받거나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c) 위치정보보호법

수집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파기 사유 및 예외는 위치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4항 및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 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意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意的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한 때라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a)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 달성 시 수집정보의 파기 사유로 정하고 있고, 파기예외로 보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b)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도 추가적으로 파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파기 예외의 사유로 보고 있다.

c)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파기사유로 보고 있다.

(b) 차이점

a)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가 파기할 때는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파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한다.

b) 정보통신망법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파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c) 위치정보보호법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파기의 예외로 보고 있다.

사) 정보주체의 권리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a) 열람 요구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하는 업무(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

유를 고지하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정정 및 삭제 요구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및 삭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여도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정보주체가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고지와 함께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 동의 거부권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4호 및 제17조 제2항 5호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b) 정보통신망법

a) 동의 철회권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항에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열람, 제공, 정정 요구권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 및 5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c) 위치정보보호법

a) 동의 철회권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意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중지 요구권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c) 열람 및 고지 요구권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d) 동의 유보권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유보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②규정의 비교

(a) 유사점

a)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각각 정보주체, 이용자,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열람한 각각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b)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 이용자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구에 따라 정정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c)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다.

(b) 차이점

a)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을 해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 제35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정정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정정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삭제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을 할 때,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 하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3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고지와 함께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b) 정보통신망법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c)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음 및 내용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아) 손해배상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a)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b) 감경 사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b) 정보통신망법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c) 위치정보보호법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27조에서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각 수범주체가 각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 이용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수범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수범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b) 차이점

a)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b)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로 보고 있지만,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자) 긴급상황 시

① 규정의 의미

(a) 개인정보보호법

a)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긴급 상황 시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와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b)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 정보통신망법

긴급 상황 시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정이 없다.

(c) 위치정보보호법

a) 긴급구조 요청

긴급상황 시에 긴급구조 요청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b) 경보발송 요청

긴급상황 시에 경보발송 요청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규정의 비교

(a) 유사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5호,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에 의하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 할 수 있다.

(b) 차이점

a) 개인정보보호법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 위치정보보호법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긴급구조기관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은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할 수 없다.

2. 문제점

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강도

1) 서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로만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반면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다시 말해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대한 정보이다. 즉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는 헌법상 개인에게 부여되는 프라이버시권 등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각각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양자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각 정보의 특성에 따라 별개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보’의 특성상 한번 침해되면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가 일치하고, 그러므로 규제의 대부분은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에 대한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정

보와 개인위치정보는 서로 대동소이(大同小異)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정보보호의 구조 하에서, 양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치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위치정보”를 규정하고 그 일부로서 보다 강하게 보호받는 “개인위치정보”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개인위치정보”와 그 외의 위치정보(이하 “단순위치정보”)를 서로 비교하고 양자에 대하여도 규제 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비교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강화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 및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따라서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도 정보주체와 물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정보주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처할 가능성도 커진다. 예컨대 현금수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가 노출된다면 쉽게 강도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이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형사범죄 이외에도,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특정 개인의 이동 경로는 지속적인 상업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높고, 따라서 유출이나 부정이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높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일회적으로 명의도용에 이용되는 정도로 활용되는 반면, 특정 개인의 이동경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위치에 있는 정보주체들에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상점에 대한 광고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등 상업적 가치가 높다.

또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한번 결정되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장시간 유지되는 ‘정적 정보’인 반면 개인위치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정보’이므로 개인위치정보의 변경 여부나 변경량, 변경 시간 등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한 시간의 위치나 방향성까지 누출되어 미래의 위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는 일반 개인정보가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능성보다는 개인의 신용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또는 적어도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한다.

3) 개인위치정보와 기타 위치정보의 비교 : 단순위치정보의 활용 진흥

개인정보의 일종인 위치정보는 우선 헌법 제17조³⁶⁾와 제10조³⁷⁾를 근거로 하는 ‘프라이버시권’ 내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대법원은 위 헌법 규정들이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³⁸⁾한 바 있다.

다음으로 형법 제316조³⁹⁾는 비밀누설의 죄를 다루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47조의²⁴⁰⁾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36)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39)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40)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처벌조항에 의해 위치정보 역시 보호된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성립도 가능하다. 그런데 위치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는 헌법, 형법, 민법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모든 종류의 위치정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휴대전화와 같이 그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고, 휴대성이 좋으며 그 소유자가 항상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의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반면 시내버스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이동경로가 일정하며 소유자와의 관계가 위치정보로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물건의 경우 그 위치정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정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위치정보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사물의 위치정보의 경우 그 보호 정도를 현저히 낮추고,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위치정보는 보다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위치정보 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생명, 신체와 관련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의 신용이나 재산권과 관련 있는 정보인 기타 개인정보에 비해서는 강하게 규제하되,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아닌 위치정보에 대하여는 보호 정도를 현저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상호간 관계

1) 서론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그 규율 범위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면서 동시에 위치정보보호법상의 “위치정보사업자” 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 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어느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하여,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5조⁴¹⁾와 위치정보보호법 제4조⁴²⁾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만 규정하여, 각 법률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제 범위와 규제의 정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법률 사이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줄이고 법률당사자

41)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42) 위치정보보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적법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관계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대상이 각각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위치정보도 일종의 개인정보이면서도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에 관해서는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로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이 법리상 당연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6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율을 하고 있으므로, 명문으로 위치정보보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규율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주체 보호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규정들은 설령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개인위치정보가 보다 강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의 관계

앞에서 검토하였듯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한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에 특유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치정보보호법의 경우, 위치정보 자체가 애초에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

여 수집된 것만을 의미하므로 정보통신망 하에서만 수집되는 정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러므로 위치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을 위치정보보호법보다 우위에 둘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위치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치정보보호법을 우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규율 방법이 될 것이다.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위치정보보호법 제4조는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외하고는 위치정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위치정보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아예 위치정보보호법에서 명확히 밝히는 법개정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상충되는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충되는 경우가 없으나, 개인위치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중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조항은 위치정보보호법에 규정이 없어도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용에서도 위치정보보호법이 가장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3. 개선방안

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강도

1) 총설

앞에서 검토한 대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위치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개정을 통해 보호대상 에 대한 보호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범주체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더 강한 벌칙을 가하거나, 보호대상의 주체(위치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될 것이다)의 권리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사업규제 등을 통하여 보호대상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의 시장 규모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규제를 통한 보호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행정벌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주된 개정방향을 잡되, 부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하였을 때 사업자의 의무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단순위치정보의 활용을 진흥하고 위치 정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는 반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진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정보수집주체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⁴³⁾은 개인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5조 제2항 제2호⁴⁴⁾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43)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를 부가적으로 수집하여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치정보보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바, 제18조를 개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별칙규정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필요최소한의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쉽다. 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⁴⁵⁾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⁴⁶⁾ 역시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입증책임을 위치정보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18조 제3항을 개정하여,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순수 사물위치정보의 규제

예컨대 버스의 운행정보와 같은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적 인격권과도 무관하다. 위치정보보호법의 취지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율범위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개인위치정보만 위치정보보호법으로써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5)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46)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허가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양자 모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객체(사물)의 소유자와의 사이에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사인 간의 법률관계로서 해결하도록 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규제 범위를 좁힌 만큼, 규제 대상인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는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한 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정적 규제수단으로써 행정청의 조사 권한을 현행보다 넓게 부여하거나, 과태료나 벌금의 상한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사물통신 시스템의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물통신은 각 사물에 고유한 주소 내지 전화 번호를 부여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통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예컨대 콜택시의 경우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배차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나, 시내버스에 단말기를 부착하여 도착시간 및 최적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사물통신사업의 경우 사업이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기기의 위치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고, 또 여러 위치정보사업자가 협업으로써 하나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개개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허가 내지 신고하여야 하고 또 각 사업자 간 위치정보를 주고받을 때마다 정보객체인 물건의 소유자에게 일일이 고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실시간성이 강한 위치정보시스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호가치 낮은 위치정보의 경우 그 제한 기준을 극도로 완화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인다.

나.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상호간 관계

1)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앞에서 검토했듯이,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보호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면, 이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그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의적 조항에 따라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이 없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일방당사자가 불복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 놓지 않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위와 같은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이 다수의 개인위치정보주체와 단일한 위치정보사업자(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이에서 행하여진다는 현실과,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단체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내지 제57조를 위치정보보호법에 준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조항을 위치정보보호법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앞에서 검토하였듯, 위치정보 자체가 정보통신망 내에서 발생되고 수집되는 정보를 전제한 개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위치정보보호법에 우선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개인위치정보의 강한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정보보호법은 제4조에서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석론상으로도 적어도 ‘위치정보’에 관하여는 위치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같이 개정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함을 명확하게 하거나, 위치정보보호법 제4조를 개정하여 “위치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위치정보 유형의 재검토

1.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의 유형

가. 서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분류 체계 및 그 규제에 대한 재정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전제가 되는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위치정보의 수집·저장·보호·이용 등에 관하여는 동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제4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치정보를 1차적으로 규율하는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이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나.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서의 ‘위치정보’ 규정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⁴⁷⁾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즉, ① 이

47) 여기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고,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것, ② 특정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일 것, ③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일 것을 그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⁴⁸⁾는 ‘개인위치정보’로서 기타 위치정보와 달리 규율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위치정보 유형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고찰해보면,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이하 ‘사물위치정보’)’로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에 따라 그 보호의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중 위치정보보호법의 주된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위치정보’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경우, 제3장에서 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해 규율하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제1절 통칙(제15조 내지 제17조)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후에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그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그 제한, 나아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각각 별개의 조문으로 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제18조 내지 제28조). 전체적으로 보면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그 외의 것으로 나누고, 공통적으로 는 그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면서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을 나누어 그 동의의 방식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을 항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48)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제2조 제2호).

2.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 유형에 따른 규제

가. 공통적 요건으로서 수집·이용·제공에 있어서의 동의

앞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그 외 사물위치정보로 나누어 그 보호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있으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 유형을 불문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서는 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단,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제29조 이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개별적 요건

1)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제한

동법은 사물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서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그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크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와 그 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 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먼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등’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8조 제1항). 또한 그 수집에 있어서도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수집이 제한된

다(동조 제3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등’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9조 제1항). 또한 위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이에 따라 제3자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은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한편,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와 같은 수집과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나아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요청을 인정하여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의 위치정보는 119 등의 긴급구조에서 인명 구조 등 공공구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의 예외로서, 긴급구조를 위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위치정보의 이용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긴급구조기관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전 동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제29조 이하). 그러나, 이러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은 ‘개인위치정보에 한정’ 되는 것이며, 그 외의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소결

앞에서 살펴본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 유형과 그 규제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1>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 유형과 그 규제

정보의 유형	위치정보의 수집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개인 위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 일정 사항을 이용약관에 사전 명시하였을 것(제18조 제1항) · 동의의 유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 일정 사항을 이용약관에 사전 명시하였을 것(제19조 제1항) · 제3자 제공시, 매회즉시통지 의무 존재 · 동의의 유보 가능
	긴급구조를 목적의 예외적 개인위치정보 이용 가능	
사물 위치 정보	물건 소유자의 동의	
	긴급구조를 목적의 예외적 위치정보 이용 불가 (관련 규정 없음)	

3. 위치정보의 침해 및 오·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위와 같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외에 위치정보보호법은 별도로 위치정보의 침해 및 오·남용에 대한 민사적·행정적·형사적 구제 제도를 두고 있다.

가. 민사적 구제 제도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이 법의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26조)을 위반한 행위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면책될 수 없다(제27조).

나. 행정적 구제제도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제28조 제2항 전단).

다. 형사적 구제제도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공개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나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등을 넘어서 개인위치정보를 오·남용한 경우 등에 있어 사업자에게 징역 및 벌금을 통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이하). 그러나,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오·남용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및 기술적 조치 미비 등에 대해서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제41조 제4호, 제43조 제2항 제4호).

2.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문제점

가. 문제의 발단

2003년, 정보통신부에 의해 ‘위치정보보호법’ 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동 법안은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육성 및 긴급구난구조 시 활용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탓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방지, 위치정보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제도 도입 등 주로 개인위치정보보호의 범위, 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활성화의 순기능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등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⁴⁹⁾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을 위치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 기보다는 위치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이 법안에서

49) 이영대·최경규, “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2004, 169면.

정의한 ‘위치정보’는 특정 시점에서의 (특정물건 혹은) 특정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로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공목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업자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⁵⁰⁾ 이러한 논란은 위치정보보호법이 갖는 이중적 기능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을 진흥을 도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위치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려다 보니 법의 체계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하여 약간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규정들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의 규제 과정에서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미비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⁵¹⁾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 위치정보 유형 및 규제의 추상성과 흠결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에 초점을 두고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그 외 ‘사물위치정보’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 역시 특정 개인 자체로부터 위치가 파악될 수는 없고 그가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인접한’ 사물의 위치로부터 개인의 위치를 유추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물위치정보와의 구별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발전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위치정보 역시 그 경우의 수가 무한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법과 같이 단순히 개인위치정보와 그 외 사물위치정보로만 분

50) 이영대·최경규, 전제논문, 169면.

51) 특히, Apple과 Google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밝혀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류한다면 그 추상성으로 인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위치 정보의 유형을 동법에서 지나치게 다양화한다면 법이 무한히 많은 경우를 규율하게 되어 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방대한 규정을 둬으로써 법의 규범적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위치정보가 어디까지인지, 그 유형 및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덧붙여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나누고 있으나, 그에 대해 각각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보호 위주로 규제가 이루어져 있어 기타 사물위치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는 긴급구조 목적의 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흠결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치정보 유형의 재편성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 행위규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 규제 강도의 조절 필요성

위치정보보호법이 위치정보의 유형에 관하여 명확히 나누고 있지 못하다보니 그 규제 강도에 있어 불필요하게 엄격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에는 개인의 위치 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위치정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과 같이 소유자의 동의가 항상 존재해야한다면 오히려 위치정보사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보호하려는 위치정보의 유형을 좀 더 명확히 하여 그 특성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덧붙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역시 불필요하게 과다하므로 이 중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 없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사항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2) 사업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 검토

이 외에도 구체적인 법 규정상의 문제점으로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은 제22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그 양도·합병 또는 상속 사실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은 위치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자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따라서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사업의 양도가 자유롭게 가능한 현행 규정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업규제의 변화에 따른 행위규제 방식의 재검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이는 본격적인 사업규제 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방향도 이러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 현행 허가제를 전제로 하여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서의 “이용약관에 따른 동의”를 법적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따라서 변화된 사업규제 하에서 이러한 “이용약관에 따른 동의”를 대체할 새로운 법적 수단이 필요한지의 여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의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규제

현행법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 침해, 오·남용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이들 외의 자에 의한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물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제재수단이 흡결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이러한 입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제수단 역시 각 유형별 위치정보의 특성에 맞게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는 결국 위치정보 유형의 세분화 또는 명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위치정보 유형을 중심으로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안

가. 새로운 위치정보의 등장에 따른 법률의 재정비

1) 동법상 위치정보유형의 단순화·명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그동안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불분명하게 나누어졌던 위치정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새롭게 재유형화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재유형화의 방법에는 첫째로 위치정보보호법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위치정보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범위를 좁히는 것과 반대로 동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위치정보를 통상위치정보, 특수위치정보로 분류하고 통상위치정보를 다시 개인위치정보와 개인관련 위치정보로 나누는 등 위치정보에 대한 세부적 유형화를 통해 동의의 요부나 방식 등을 달리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수집 등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그 분류의 기준이 모호한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법 규정이 너무 많은 구체적인 경우들을 규정해야 해

서 필요 없이 방대해져 오히려 입법의 취지를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의 목적(제1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행법상의 ‘개인위치정보’ 만을 위치정보보호법상의 위치정보로 하고 그와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물위치정보는 동법에서 제외시켜 법의 규정을 단순화시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물위치정보가 위치정보보호법상의 위치정보에서 제외된 이상, 개인의 위치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정한 집단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 역시 개인위치정보에 포함시켜 동법에서 보호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2) 유형 단순화에 따른 규제강도의 조절 및 규제방식의 재조정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나누면서도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등에만 치중하여 사물위치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호가 미흡하거나 흠결된 부분이 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는 그 민감한 정도 등에 따른 구별 없이 모두 엄격하게 그 수집 등을 규제하고 있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진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치정보 유형을 단순화하여 동법에서 사물위치정보를 제외시키고 개인위치정보만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에 맞게 규제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개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에는 그 보호에 중점을 두어 동법에서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개인과 무관한 사물의 단순위치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동법에서 제외시켜 그 보호보다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등에서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 중에서도 집단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위치정보보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에 포함될 집단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집단위치정보의 특성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완화된 규제를 하도록 한다. 즉 특정집단의 위치정보가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⁵²⁾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일반 개인위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 활용에 있어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집단의 일정 구성원들의 위치정보를 고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⁵³⁾에 있어서는 개인위치정보보다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해당 구성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 위치정보 활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율범위에서 제외하여 법적용의 명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위치정보보호법의 지위 확정(타법과의 관계 정립)

또한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인위치정보만을 다루게 되면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타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상 지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기타 개인정보들보다 강한 보호가 필요하고 따라서 동법에서 특별히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할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중에서도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보호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위

52) 셔틀버스의 고정 운전기사,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고정 배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53) 특정집단이 단체로 대여한 버스(수학여행, 졸업여행, 야유회 등)의 경우, 그 집단 일정 구성원의 위치정보를 일정 시간동안 나타내게 됨(셔틀 버스 등을 불특정 구성원이 이용하는 것과 구별됨)

치정보에 관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이 최우선 특별법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치정보사업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보호의 강화

현행법이 위치정보사업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제3자 양도 시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양도인 혹은 양수인인 제3자가 사업의 양도와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 양도 사실 등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과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에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새로운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위치정보보호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규제 방식이라 생각된다.

다. 사업규제의 완화에 따른 행위규제의 법적 수단 대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있어 그 행위규제의 법적 수단으로 “이용약관에 따른 동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이용약관에 의한 동의 자체가 반드시 허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등록제나 신고제로 사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약관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거나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등록제나 신고제로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의 ‘이용약관에 따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단, 사업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약관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개인정보주체 간의 사전 계약에만 맡겨놓는 경우 이용약관에 의한 동의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약관에 따른 동의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대부분이 어플리케이션 등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 및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자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면 사업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때의 동의방식으로 미국의 법안들과 같이 Opt-Out⁵⁴⁾ 방식을 택한다면 대다수의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설정은 Opt-In 방식으로 하여 ‘동의하지 않음’을 기본 상태로 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이용약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가 어디에 이용되며, 어느 정도로 수집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최소 1회 이상 그 정보 수집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정보주체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설정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동의의 주기(term)는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사업규제 완화 등으로 위치정보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수집 목적 및 범위,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따라 위치정보주체가 정보주체가 최초의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정보결정권 및 위치정보 활용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최소 및 최대 주기(term)는 하위 법규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거

54) 초기 설정이 위치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초기 설정이 위치정보의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보통 Opt-Out 방식이라 칭하며, 이와 반대로 위치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설정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식을 Opt-In이라 한다.

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권리구제 수단의 개선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침해나 오·남용에 대해서 민사적·행정적·형사적 권리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치정보에 대한 세부적 유형화가 이루어져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위치정보의 침해 시, 어떠한 권리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각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권리구제의 실효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과 같이 일반적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권리수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침해는 즉시성을 가지므로 침해에 대한 즉시적이고 유효한 임시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 외의 위치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비하여 사업자의 민·행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 인정된다. 특히, 민사적 책임으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액 추정제도 등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적 책임으로는 부당·불공정한 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형사적 구제제도의 경우 침해에 대한 구제의 성격보다는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므로 민사적·행정적 구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각 유형에 따라 형사적 제재 역시 세분화하여 그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위치정보 사업의 분류 및 규제의 재정비

제1절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의 분류체계

1. 위치정보 관련 사업 분류 체계

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와 관련한 사업을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분류한다. 이로써 양 사업자의 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을 차등 규제하되, 위치정보 보호의무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6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법 제2조 7호)을 말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GPS, 위치측위서버 등)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SK 텔레콤, KT 등의 이동통신사는 대표적인 위치정보사업자이다. 수집이란 이용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작하여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수집이란 용어 대신 취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수집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로 볼 수 없다. 다만,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업자가 직접 위치기반서비스에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업체가 해당 사용자에게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네비게이션 제작 및 서비스업체인 톱크웨어는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음과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였다.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내부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1년 1월 현재 위치정보사업자의 목록은 < 표 4-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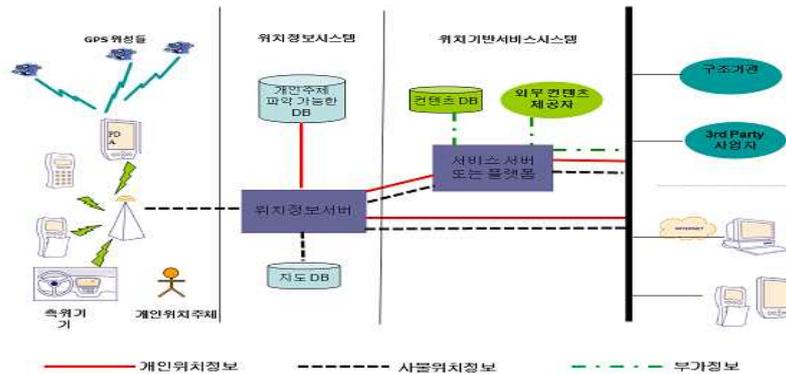
<표 4-1> 2011년 1월 현재 허가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구 분	허가사업자(81개)
1차(' 05.10)	SK에너지, 케이티파워텔, 현대자동차, KT, 온세텔레콤, 위트콤, 비엔지로티스, 로티스, SKT, 대신정보통신, 썸넷, 톱크웨어, 엘지텔레콤, 트라텍정보통신, 케이티로지스, 백산아이티에스, 비엔비솔루션, 시너소어, SK마케팅앤컴퍼니 (19개)
2차(' 06. 1)	한국위치정보, 유비퍼스트대원, 엘렉스테크, 마이텍코리아, 티온텔레콤, 백산모바일 (6개)
3차(' 06. 9)	에브리웨어, 코리아오브컴, 리얼텔레콤, 넥스모어시스템즈 (4개)
4차(' 07. 4)	이케이시스, 아이엔, 유비폴로, 블루칩인터넷 (4개)
5차(' 07. 8)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웍스, 아이원맥스 (3개)
6차(' 08. 2)	신동디지털, 선진LBS, 자티전자, 하나로스쿨네트워크스 (4개)
7차(' 08. 8)	동부건설, 에어미디어, 씨메카, 엠앤소프트, 지센하이텍, 네오지엔피, 대진기술정보 (7개)
8차(' 09. 6)	에온웨이브, 셀리지온, 엘비씨소프트, 경봉티엔씨, 루키스, 엠투엠글로벌, 티모넷, 트윈클리틀스타 (8개)
9차(' 09.11)	애플코리아, 코리아로지스 (2개)

<p>10차('10.04)</p>	<p>삼성전자(주), 피알에프(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엔에이치엔(주), 서울특별시, (주)유플렉스, 동릉H&K(주), 구글코리아(유),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위드유, 키위플(주), (주)케어로드,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13개)</p>
<p>11차('10.10)</p>	<p>한국노키아(주), 서울이동통신(주), (주)에넥스텔레콤,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프라빈소프트(5개)</p>
<p>12차('11.01)</p>	<p>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 스카이혹와이어리스아이엔씨, (주)아인텔, (주)엔알피시스템, (주)에스원, 아리온통신(주)(6개)</p>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물류·관광 등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이용이란 위치정보를 CRM(고객관계관리), 마케팅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공이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위치정보에 부가서비스를 첨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4-1] 위치기반서비스의 정보흐름도



2011년 2월 14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표 4-2>와 같다.

<표 4-2> 2011년 2월 14일 현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목록

신고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주)썬넷, 대신정보통신(주), 비엔비솔루션(주), (주)폴리큐브, 포스테이타(주), 에스케이텔레콤(주), 트라텍정보통신(주), (주)백산모바일, (주)엠가온, 대한통운(주), (주)이직스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주)제이엠넷, (주)버추얼웨어, (주)로티스, (주)엘지텔레콤, (주)바로바로넷, (주)네오지엔피, (주)아로정보기술, 블루칩인터넷(주), (주)스피드엠, 카인즈소프트(주), (주)팜미디어, 현대자동차(주), (주)사이넷, (주)마이텍코리아, (주)케이티로지스, SK에너지(주), 포인트아이(주), 모빌토크(주), 케이티하이텔(주), (주)열정컴퍼니, 씨엔에스캠프(주), (주)파네즈, (주)한국데이터하우스, (주)극동네트웍, (주)네멕스, 케이아이티(주), 텅크웨어(주), 케이티파워텔(주), (주)인포러스, (주)쏘바쥬, (주)케이씨인벤티브, (주)케이티, (주)에어아이, (주)메타미디어, (주)테크노코리아, (주)로코모, (주)씨드솔루션, (주)모바일큐브, (주)메그, 야후코리아(주), (주)파스넷, 휴네시온, (주)캡스, (주)에이디티캡스(ADT), (주)쓰리소프트, 리얼텔레콤(주), (주)네모드림, (주)모비오, (주)알리트, (주)크레디프, 티온텔레콤(주), (주)엘비에스플러스, (주)지호텔, (주)아이원맥스, (주)라이온로지스, (주)에브리웨어, (주)배리스, 아이넥스네트웍(주), (주)아레오네트웍스, 에스케이씨티에이(주), 한국위치정보(주), 유로아이텔레(주), (주)백산아이티에스, 동부엔티에스, 사이트온(주), (주)플레이에듀테인먼트, 스미스앤모바일(주), (주)네비웍스, (주)유비플로, (주)이케이시스, (주)은세일유평판,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야호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투비플라자, (주)와이즈네트웍, 인포뱅크(주), 시너소서(주), 서울씨티콜(주), (주)엘비씨소프트, (주)컴투스, (주)에스시머, 동부익스프레스, (주)선진엘비에스, (주)사이버맵월드, (주)한국위치정보 래스큐, (주)바인아이엔지, (주)케이웍스, (주)동일정보통신, (주)인포렉스, (유)엔와이텔, 제주존, (주)애니와이드, (주)지센하이텍, SK커뮤니케이션(주), (주)지로커뮤니케이션, (주)엠에스피테크놀로지, (주)에어미디어, (주)텔넷웨어, (주)BH정보통신, (주)유비퍼스트대원, SK마케팅앤컴퍼니(주), SK네트웍스(주), (주)다우기술, 유빈스(주), (주)다움커뮤니케이션, (주)네오팩스, (주)지어소프트, (주)메트로이플로지스, (주)티모넷, (주)오토라이프테크, 나인타임즈(주), (주)정진하이테크, (주)유비홈커뮤니케이션, (주)필링크, (주)코리아로지스, (주)엠앤소프트, 서울특별시, (주)이투엠커뮤니케이션, (주)네오넥스소프트, 강원도청, 애플컴퓨터코리아(유), 애플코리아(유), 성남시청, (주)오픈잇, (주)이에스엠소프트, 엔에이치엔(주)(NHN), 삼성에스디에스(주), (주)모리소프트, 부산광역시청, 키위플(주), (주)셀리지온, (주)은세텔레콤, (주)와이즈테크, (주)애니케어네트웍스, (주)모람씨엔티, (주)트리포스, (주)이루온엘비에스, 주식회사 케어로드, 주식회사 쿠콘, 피알에프(주), 주식회사 사이버프리, 구글코리아(유), 국민은행, (주)엠티엠미디어, (주)이스트에드, 삼성전자(주), 서치솔루션(주), (주)하나은행, (주)폴포존, LIG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오너스커뮤니케이션(주), (주)네오위즈게임즈, (주)마이트로, 외환은행, (주)나우콤, (주)엔씨티, (주)다날, (주)로데브, (주)우리은행, (주)블루다임, (주)지비엠아이엔씨, 케이엘텔레시스, 에듀빌, (주)프

리노믹스, SK컴즈, (주)행복출발, 라이프앳스, 한국노키아(주), 네오위즈아이엔에스, 스토니 키즈, 원피스, 교보생명, (주)아워드, 농협, 유지엠스, 몽소프트, (주)아이엔소프트, (주)유플렉스, NBP, 애니모비, 씽크풀, 에스웨어, 바인, 팜즈, 웨어링크, 이모션, 포비커, 라이트브레인모바일, 서신평, 온미디어, SNG(에스엔지소프트), 시온, 골콘다, 섬엔지니어링, 올라웍스, 에이모션, 타운스퀘어, 유리소프트, 리더소프트, 록앤올, 에스제이커뮤니케이션, 모비더스, 썬틴, 부동산일일사, 쿠크스, 모토로라, EMS, 유니위즈, 와플스토어, 씽크리얼스, HTC, 엔소울즈, 소프트씨큐리티, 이노빈, 우아한 형제들, 티나눔

나. 진입규제로서 허가 또는 신고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시장으로의 진입을 규제한다. 즉,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운전 면허 학원의 설립인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등이 허가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A가 홍익대학교 앞에 대중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여도 A군이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신고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⁵⁵⁾ 자체완성적 신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1년 전국체전 보디빌딩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B가 강남구에 휘트니스 클럽을 영업하고자 할 때 B는 반드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 효과는 B가 제출한 신고서가 강남구청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55) 홍정선, 행정법 특강, 전면개정판 제10판, 박영사, 2011, 100면.

이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여기서 수리란 사인이 알린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등록으로 불리기도 한다. 위의 예에서 흥대 앞에서 창업한 A가 떡볶이 장사로 돈을 모은 후 강원도 평창에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A는 먼저 행정청에 골프장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체력단련장업과 달리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과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성립한다.

<표 4-3> 자유의 제한과 해제의 형태

	자유 의 제한	해제의 형태		예
강	절대적 금지	-		인신매매
↓	억제적 금지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		아편사용금지
	예방적 금지	허가		운전면허학원, 대중음식점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골프장업, 스키장업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약	자유	-		담장설치

다. 차등규제의 구체적 내용

1)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개인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제공한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직결되는

바 이러한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설비,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보호조치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설비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위치정보사업을 허가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술적인 보안대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사업자 내부의 인적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및 동기관 구성원의 도덕적 자질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⁵⁶⁾

본질적으로 위치정보사업은 고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법 제5조는 이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치정보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이 발생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거나 개인위치정보를 위한 충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위치정보가 이전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격 사업자를 배제하여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의 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⁵⁷⁾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률은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할 것과 관련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56) 위치정보보호법 제6조

57) 위치정보보호법 제7조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단순히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진입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⁵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양도·양수, 상속, 합병·분할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변동이 있으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을 위한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⁵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후 관리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일정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사업 진입 시 신고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진입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휴지·폐지에 대해서도 신고토록 규정한다.⁶⁰⁾

58) 위치정보보호법 제9조

59) 위치정보보호법 제10조

60) 위치정보보호법 제11조

<표 4-4>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비교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규제방식	허가	신고
행위	수집, 보유, 제공	취득, 이용, 제공
위치정보 유형	개인, 사물	개인, 사물
임원의 결격사유	○	×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인가	신고
사업의 휴지·폐지	승인, 개인위치정보주체 통보	신고

2. 위치정보 관련 사업 분류 체계의 문제점

가. 규제의 정당화 근거에 따른 문제점

“규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답은 시장실패의 치유에 있다.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경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고, 이러한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규제가 준비한 것은 광범위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Coase에서 비롯된 법경제학 입장에서 시장실패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적 배경에 불과하며, 규제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⁶¹⁾⁶²⁾

양자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규제가 왜 필요한지의 근거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① 시장실패, ② 거래비용의 최소화, ③ 법원의 불완전성, ④ 정치적 영합 등이다. 이를 단순화하면 규제의 정당화 근거는 < 표 4-5 >와 같이 “시장실패의 치유” 또는 “거래비용의 최소화”로 귀결된다.⁶³⁾

<표 4-5> 규제의 근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과 이분법의 도출⁶⁴⁾

규제도입의 근거	개요	해석	규제의 정당성 기준
시장실패의 치유	시장이 근본적인 실패를 배태하고 있으니,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		규제가 시장실패에 대한 치유책으로 도입되었는가?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시장실패의 대부분은 거래비용의 문제이므로 정부개입이 필요 없고, 만약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면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에 국한되어야 함		규제가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61) 경쟁이 기업의 능률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시장은 잠재적 실패를 해결하는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는 한편, 계약은 법원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대부분의 외부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설사 계약을 통해 모든 탈계약적 행위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해도 손해배상법령(tort law)이 이러한 나머지 대부분의 외부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거래비용이 최소화 되어 잠재적인 외부성이 계약을 통해 해결된다면, 이렇게 해결된 문제에 대하여 굳이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도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62) 지광석, 김태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2010 여름), 263면.

63) 지광석, 김태운, 전계 논문, 264면.

64) 지광석, 김태운, 전계 논문, 264면.

법원의 불안전성	법원의 판결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므로 규제를 통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을 경감시켜야 함	거래비용의 최소화 경감과 본질적으로 유사	
정치적 영합	규제도입은 대부분 특정 이익이나 공중과 영합하려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	규제도입의 당위성 보다는 경위 내지는 배경을 설명	

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철폐할 경우 발생한 주된 문제는 개인위치정보의 남용 및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이다. 본질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성질상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인터넷 사업체 소속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상 거래하여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사례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⁶⁵⁾ 마찬가지로 위치 관련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시장 실패로 직결될 것이다. 충분한 기술적 보안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보관하는 위치정보가 해킹으로 인하여 누출되는 문제도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⁶⁶⁾ 따라서 위치정보 관련 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 실패를 배태

65)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11090608383938&cDateYear=2011&cDateMonth=09&cDateDay=06(뉴시스, 류난영 기자, “삼성카드 회원 20만명 개인정보 유출”)

66)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11082020301052&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20(뉴시스, 황호필 기자, “한국엠펙슨 해킹, 35만명 개인정보 유출 '또 당했나'”)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진입 규제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진입 규제는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문제점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함으로써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가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되게 된다.⁶⁷⁾⁶⁸⁾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진입 규제를 함으로써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이다.⁶⁹⁾ 위에서 예시하였던 대중음식점 영업을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 A는 홍대 앞에 떡볶이 집을 운영하고 싶지만 창업할 자유가 제한된다. 즉, 허가 없이는 대중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한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바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서의 진입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합헌적이며 적절한지에 관하여 단계이론에 따라 검토하는데, 단계이론이란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이론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단계이론에 따라 현행 진입 규제의 합헌성을 살펴본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입법권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진지성이 제일 작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

6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9판, 박영사, 335면.

68) 강학상 허가와 관련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관한 논란 및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위치정보보호법은 제5조 제3항 5호 및 동조 제4항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정한 목적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69) 헌법 제15조.

으로 목적달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은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바겐세일의 연중 횟수와 기간 등을 제한하며, 택시의 합승행위금지, 택시의 격일제 영업제도, 유흥업소 및 식당의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⁷⁰⁾

다음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2단계 제한은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업의 성질상 그 직업수행이 일정한 전문성·기술성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직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업선택을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 또는 시험합격 등과 같이 기본권 주체 스스로가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한 주관적 사유 내지 전제조건과 결부시켜서 제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의료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국가고사합격을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1종 면허의 소지자가 아니면 영업용 택시운전 기사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것 등이 2단계 제한에 해당한다.⁷¹⁾

마지막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3단계 제한은 기본권주체와는 무관한 어떤 객관적 사유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진지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에 따라 직업의 자유보다 월등하게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기본권주체와는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내세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과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3단계 제한에 해당한다.⁷²⁾⁷³⁾

먼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2단계 제한에 해당한다. 일정한 시설 설비를 갖춘 사

70) 허영, 한국헌법론(전정5판), 박영사, 2009, 462면.

71) 허영, 전게서, 465-466면.

72) 헌법재판소 2002. 4. 25. 결정 2001헌마614.

73) 허영, 전게서, 466-467면.

업자는 필요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객관적 사유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3단계 제한에 해당한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제3단계 제한은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가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엄격히 고려하여 허가제로 운영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정할 필요가 있다.

<표 4-6> 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단계 이론

	1단계 제한	2단계 제한	3단계 제한
내용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주관적 사유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객관적 사유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제한의 정도	적음 → 많음		
예시	택시의 격일제 운행,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의사의 국가고시 합격, 1종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영업용 택시운전	퇴직공직자에 대한 유관사기업체로의 취업제한
비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

그렇다면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일까? 위치정보보호법은 산업분야에서의 위치정보 활성화와 함께 긴급구조 등 공공분야에서의 위치정보 이용기반을 조성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

해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법은 법률명에서 나타나듯이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양측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⁷⁴⁾

먼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우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 도입, 사업 허가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규제제도를 규정(제2장)하는 한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제3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긴급구조와 재해·재난 등의 경보발송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명시(제4장)하고,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표준화 추진, 정책 심의 등을 위한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설립·운영 등을 규정(제5장)하고 있다.

결국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위치정보의 산업적 이용 보장의 조화가 기본이념이며,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여러 권익보호 기능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서 허가로 운영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수단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허가제보다 자유의 제한이 약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공공의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면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헌법적인 결정이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시설에 대한 사전 심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치정보보호법의 진입 규제 중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 직업선택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의 여지가 있으므로 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요구된다.

7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1., KISA.

다. 위치정보 관련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문제점

현재 국내 위치정보 관련 시장은 지나친 규제위주의 법령, 독점적 산업 환경,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물위치정보만을 취급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사용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당해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사물위치정보만을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등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와 관련 없이 시장의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에게도 허가신고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과잉 규제이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방안

가. 규제 완화의 방안 검토

1) 허가제에서 신고로의 전환

여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를 말한다.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시킨다 하여도 만약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아닌 수리절차로서 실질적 검토를 요소로 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허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⁷⁵⁾ 또한 대법원은 현행 법규를 해석하며 신고의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 검토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⁷⁶⁾

75)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167면.

인·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 규제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완전한 본래적 의미의 신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신고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다만, 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서도 형식적 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데(행정절차법 제40조) 형식적 요건의 구비는 요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의 심사가 존재하는 한 결국 기속적 효과를 갖는 허가와의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에 있어서는 심사와 처분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은 피규제자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⁷⁷⁾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신고로 전환한다면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과 직결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개인정보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개인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기정보결정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76)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565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77)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고 외에 인·허가 자체에 있어서도 일정기간동안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인·허가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강제규정을 두자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인·허가 기준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2009. 73-74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는 시장진입규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를 들 수 있다., 선정원, “기한방식에 의한 인·허가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 행정법연구, 2001 하반기, 241면.

다⁷⁸⁾. 그렇다면 개인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시장진입에 앞서 반드시 행정청의 사전적인 실질적 요건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운용하는 것은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치중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의 또 다른 목적인 위치정보의 보호를 경시하는 방안에 해당하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2)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등록으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등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행정실무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포함한 신고가 때때로 등록이라는 명칭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등록의 의미는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관계를 특정한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등록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가 있을 후 이에 대한 권한 있는 행정청의 기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쌍방적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일선에서 형식적, 실체적 심사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본래적 의미의 등록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⁷⁹⁾⁸⁰⁾ 즉 등

78)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에서 나오는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찾고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도42789 판결).

79) 홍정선, 행정법 특강, 제9판, 2010, 박영사, 234면; 참고판례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등록사항이 정기간행물의 외형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제를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9헌바2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적절하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정하여

록에 필요한 제반 요건들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의 입장은 외형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 바, 대법원은 등록에 있어서도 법령상의 제한이외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재량행사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등록은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적 심사와 실체적 심사로 이원화하여 등록과 타 규제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한 원칙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⁸¹⁾ 다만 양 판례가 등록의 공통된 부분으로 형식적 심사를 지적하고 있고, 대법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체적 심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볼 때 등록 역시 규제완화의 대안으로 활용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⁸²⁾ 따라서 기존의 인·허가제도를 자기완결적 신고와 함께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공익목적 달성은 사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완화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등록제도 역시 규제완화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로부터 얻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은 등록을 통하여도 동일하게 관철될 수 있다. 여기서 등록은 기본적으로 형식적 심사이어야 하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질적 심사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등록 요건 중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을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실질적 심사 가능성을 명시하여 당해 요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되 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허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

80) 최계영, 전계 논문, 168면.

8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한상우, “인·허가의 판단기준에 관한 입법적 고찰”, 법제, 2002. 18면.

82) 최계영, 전계 논문, 169면.

제를 등록제로 완화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 규제의 완화

사물위치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능한 정보이지만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의 개념에 사물위치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⁸³⁾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도 위치정보사업자로 포섭하여 허가제를 통한 규제를 한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만을 취급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적합한 규제방식이라 할 수 없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법익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이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취급하는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기정보결정권과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제를 도입할 공익상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물지능통신(M2M) 산업의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⁸⁴⁾⁸⁵⁾ 따라서 사물위치정보를 수집

8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84) 사물지능통신이란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이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일컫는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 등을 기계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술이다.

85)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재구성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60년 3600만개 수준이었던 M2M 단말기가 2000년에는 60억개, 2040년엔 1조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60년엔 사람 100명당 1명 꼴이던 M2M 기기가 2000년 1명당 하나로 늘어나더니, 2040년엔 1명당 100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료는 예측했다 (<http://www.bloter.net/archives/69825>).

함에 있어서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는 것과는 별개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통한 진입 규제를 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다. 같은 논리로 사물위치정보만을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과잉 규제이며 사물위치정보만을 취급하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 진입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한편 개인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받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위치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보다 엄격해야 한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에서 정보노출은 저장과 전송 모두에서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는 저장사업자와 활용사업자 모두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위치정보를 일시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행위규제만을 통해 사업자에게 정보암호화 의무를 부과할 경우 무책임한 사업자의 난립에 따른 정보노출 위험성 증가, 소비자의 피해보상에 있어서의 문제 등 소비자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의 확보는 사업을 개시할 때 의무사항으로 하여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

1) 공통된 사항

전술하였듯이 현행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허가는 헌법적 관점,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서 규제 완화로서 등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일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없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의 모든 진입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공익상의 목적 달성에 무방하다. 제1안과 제2안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 방향을 공통적으로 채택하였다. 다만 제1안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개념에 포함시키는 현재의 위치정보 개념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다양하게 재분류하여 구체적 필요에 따라 저인망식 규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사업자를 다양하게 분류하였기 때문에 진입

규제 뿐만 아니라 행위 규제의 측면에서도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용이하다. 제2안은 위치정보 개념에서 사물위치정보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 위치정보 관련 사업 체계를 유지한 규제 방안이다. 제2안에 따른 사업 분류는 단순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제1안(현행 위치정보 개념 유지)

위치정보사업을 취급하는 위치정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재분류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도 취급하는 위치정보에 따라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재분류한다.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모두 다루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분류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행위 태양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의 위치정보사업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전술하였듯이 허가를 등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시장 진입은 등록으로 규제한다.

위치정보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개인위치정보 이외에 개인의 위치정보와 관련이 없는 사물위치정보가 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행위태양은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사물위치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이지만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의 개념에 사물위치정보를 포함시킴으로서⁸⁶⁾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

86) 제2조(정의)

물위치정보사업도 위치정보사업으로 포섭하여 허가제를 통한 규제를 한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활성을 저해하므로 적합한 규제방식이라 할 수 없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위치정보사업을 허가로 운영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법익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이지만 사물위치정보는 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제로 규제하는 것도 부당하다.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는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와 같은 논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소유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도 역시 완전히 진입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사업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취득·이용 대상이 되는 개인위치정보는 모두 매우 엄격한 수준의 관리활동을 요구되며, 개인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도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거나 추적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제도대로 신고로 시장진입을 규제하여 개인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 하에 둘 필요가 있다.⁸⁷⁾

다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가공하여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현행과 같이 위치기반서비스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87) 진희채, 선요섭, 남광우,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 공간정보시스템 학회논문지 : 제11권 제1호(2009. 03), 178면.

업신고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오직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 4-7> 사업자 분류 개선 방안 1

사업 분류(현행)	사업 분류(개정)	위치정보의 종류	진입 규제
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	등록
	사물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	신고 또는 철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인위치정보	신고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물위치정보	신고 또는 철폐
다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가공하여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없이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따른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3) 제2안(현행 사업자 분류 유지)

제2안은 현행 사업자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위치정보의 개념을 수정한다. 즉,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의 위치정보의 개념에서 사물위치정보를 배제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본다. 이 경우 제1안에서 제시하였던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 제1안에서의 개인위치정보사업이 위치정보사업의 유일 개념이 될 것이며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곧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다.

제2안에서는 위치정보서비스사업을 등록으로 규제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신고의 사항을 대폭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4-8> 사업자 분류 개선 방안 2

사업 분류	진입 규제	위치정보의 개념
위치정보사업	등록	위치정보란 개인위치정보만을 의미하며 사물위치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p>다만, 위치정보를 수집하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가공하여 위치정보 주체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으로만 본다.</p>		

제2절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의 규제체계

1. 위치정보 관련 사업 규제체계

가. 규제대상 사업

1)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법률적 규제

현행 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크게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Cell ID, GPS, RFID 등을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하는 위치정보 사업의 대표적 예로는 Bus Management System이 있다. 버스 간격 운행정보 확인과정에서 버스 및 운전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친구찾기, 경우, 차량관제, 교통정보, 관광, 길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정보 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신고제로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가 모두 필요하다.

[그림 4-2] 사업유형별 규제 내용



2)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사전적·사후적 규제

가) 사전적 규제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1항). 상호, 주소지의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이 저하되어 위치정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7항). 사업을 양수 하거나 합병·분할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가 요구되며(제7조 제1항), 사업의 폐지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이 폐지될 경우 수집된 개인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사실에 대한 확인 자료는 파기하도록 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경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신고를 해야 하고 상호·주소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시(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저하된 경우에 한함)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9조). 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및 사업의 휴지·폐지 시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1조).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나) 사후적 규제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를 기술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점검할 의무를 진다(제16조 제3항). 또한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도 가능하다(제13조, 제14조).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한 경우는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된다(제39~41조).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치정보서비스의 이용자는 개인의 위치정보 열람할 수 있고,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43조).

3) 위치기반 서비스의 법률적 규제 분석

가)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 범위

위치기반서비스 규제 범위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모델의 바탕위에 법률⁸⁸⁾과 법률시행령⁸⁹⁾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먼저 위치정보의 범위는 법률의 정의 부분에서 규정되어진다. 법률 제2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위치정보는 물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시점 또한 현재와 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 모두가 위치정보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정보의 종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의 모든 형태와 신호가 대상이 되고 이 신호가 유무선 및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통신이 되어 수집된 것을 정보의 대상으로 한다. 반면 개인위치정보는 사물의 위치가 아닌 특정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를 의미한다.⁹⁰⁾ 개인 위치정보는 독특한 특징이

88)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6호), 200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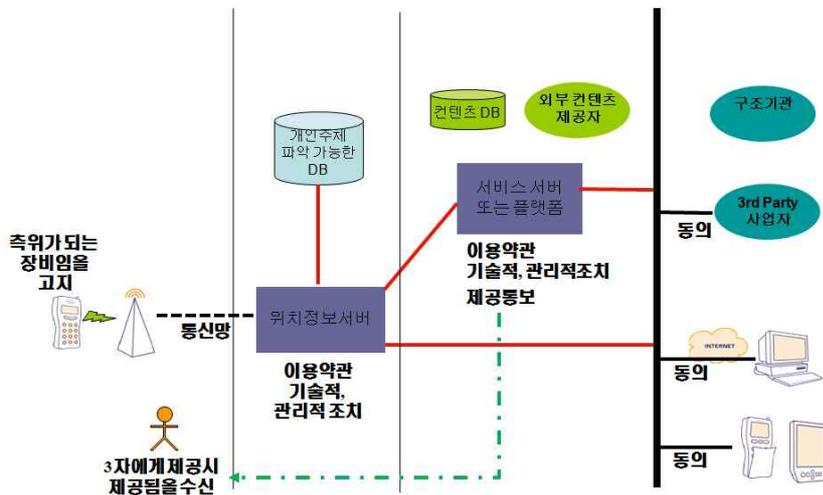
89)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0호), 2008.2.29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위치가 직접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위치로부터 개인의 위치를 유추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의 특정 위치를 파악하게 되며 이런 정보의 결합작업이 개인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

이동주체의 위치정보 서비스 서버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동성이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측위 될 수 있는 장비임을 고지하는 것과 개인의 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의 의무가 있고, 위치정보 서버에서는 위치정보 수집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약관 동의 및 관리 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있다. 서비스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약관 동의 및 관리 조치 등이 있고, 제3자에게 제공시에는 개인 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의 의무도 부과되게 된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보의 흐름 특성 관점에서는 측위장비로부터 위치정보 서버까지는 부호나 신호 등의 정보가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후에 전달과정의 정보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만 정보흐름의 모든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90) 오태원, “개인 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 서비스의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제6호, 2002, 1-15면; 조용혁,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정보화정책, 제12권 제2호, 2005, 123-143면

[그림 4-3]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범위 총괄



나) 위치기반서비스 유형별 규제범위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가 모든 위치기반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아니다. 규제의 적용범위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① 위치기반서비스 형태 분석

위치기반서비스의 분류 형태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분류 방식은 서비스의 제공형태, 사용자의 구분 정확도 등에 따른 기술적 구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⁹¹⁾ 그러나 지금까지의 서비스 분류방식은

91) Jeremy G, Dario B. and John D., “Mobile Location Services : Market Strategies,”

공급자 관점에서 기술적 대상을 구분하거나 서비스의 형태나 성격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구분하는 방식의 서비스 분류기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서비스 분류방식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시하는 위치정보의 흐름에 따라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다.

(a) 개인위치정보서비스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거나 추적하여 위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주목적인 서비스로, 위치확인서비스, 친구찾기, 안전 및 구난 출동 서비스,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집단위치추적서비스 등이 있다.

(b) 개인관련 위치정보서비스

개인위치정보와 다른 콘텐츠 또는 주요 정보가 융합되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가족안심서비스, 교통서비스, 항법서비스, 미팅서비스, 셰이프카드서비스, 운세 및 게임서비스, 광고서비스, 레크리에이션서비스, 택시 및 대리기사 관제서비스 등이 있다.

(c) 집단위치서비스와 단순위치정보서비스

원래 본래의 목적을 갖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위치정보를 도입하거나 부품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본래 서비스를 더 고도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물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도난차량추적서비스, 화물차량위치추적서비스, 선박위치추적서비스, 버스운행관제 및 안내서비스, 재난재해감시 및 통제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RFID 기반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 환경감시서비스, 노약자안전서비스, 기계제어서비스 등이 있다.

② 서비스 유형별 정보흐름과 규제

(a) 개인위치정보서비스

위치정보서비스는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거나 추적하여 위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주목적인 서비스이므로 모든 서비스의 흐름 및 내용이 법률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또한 대상이 되는 주요 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모두에 대한 관리활동도 매우 엄격한 수준의 관리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도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거나 추적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다. 이 서비스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 이외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b) 개인관련 위치정보서비스

위치정보부가서비스에서도 개인위치정보의 흐름은 포괄적으로 법률적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과 관련 하여는 사전에 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치정보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위치정보부가서비스에서는 개인위치정보에 다른 부가 정보나 콘텐츠정보를 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는 이동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밖에 콘텐츠정보를 융합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 정보와 융합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c) 집단위치서비스와 단순위치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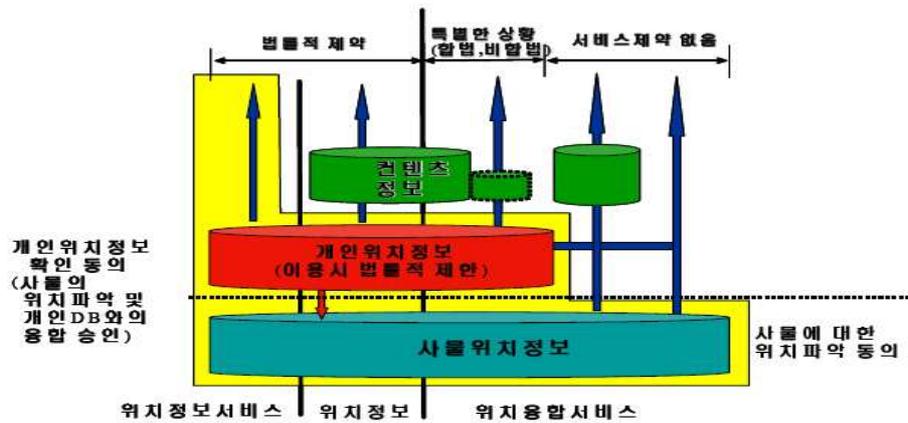
이 서비스의 특징은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의 두 서비스와의 차이라고 하면 앞의 서비스들은 개인위치정보가 중심이 되므로 사물의 위치와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서비스 되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서비스는 사물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위치융합서비스는 사물의 위치추적에 대한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동의를 얻게 된 사물의 위치정보는 통상적으로 개인위치정보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후 사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사물의 위치정보파악 동의만 있으면 위치융합서비스는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소유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서는 통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긴급구조가 발생하는 경우라던가 범죄·도난·실종 등의 발생 등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긴급구조의 경우라면 법률에서 그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여 구조하거나 서비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밖의 예외 상황에서는 개인위치정보 확인은 법률적으로는 허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⁹²⁾

다) 위치정보보호법의 표준화

92) 진희채, 선요섭, 남광우,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 공간정보시스템 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2009. 03, 178-180면

법률적 내용을 기준으로 결합되는 정보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세 가지의 정보 유형이 존재한다. 사물의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그리고 각종 콘텐츠 정보가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활용된다. 그 중 개인위치정보는 반드시 사물의 위치 정보를 수반하여야 획득되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그 어떠한 서비스도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위치융합서비스와 같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사물의 위치를 취득할 수 있다는 동의만 있다면 모든 서비스영역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위치융합서비스가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긴급구조 이외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함을 알 수 있다.⁹³⁾

[그림 4-4] 서비스 유형별 정보의 결합형태



93) 진희채, 선요섭, 남광우,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 공간 정보시스템 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2009. 03, 181-182면

〈표 4-9〉 위치정보 유형별 규제 분석

표준화 대상	개인 위치정보 서비스	개인관련 위치정보 서비스	집단위치서비스와 단순위치정보서비스		
			사물위치 정보활용	개인위치 정보파악	긴급구조
위치정보 획득	○	○	○	○	○
개인위치정보연계 및 융합인터페이스	○	○		○	○
사물위치정보호름 및 인터페이스			○		
위치정보, 보호관리	○	○	○	○	○
개인위치정보 관리	○	○		○	
위치정보서비스 인터페이스		○			
긴급구조 인터페이스	○	○			○
법률적 특성	규제	대부분 규제	허용	동의필요	허용

나.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규제

1)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위치정보

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위치정보수집의 원칙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⁹⁴⁾ 예를 들면 잃어버린 휴대 전화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⁹⁵⁾

이를 위반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⁹⁶⁾

나) 필요 최소한의 수집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⁹⁷⁾ 필요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⁹⁸⁾

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본문

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

9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4호

9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9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6호

다) 기망을 통한 수집 금지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함)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 안 된다.⁹⁹⁾ 주민등록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및 ESN(Electronic Serial Number, 장치일련번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여 친구찾기 서비스 등 원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¹⁰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¹⁰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¹⁰²⁾

라)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사실의 고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¹⁰³⁾

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10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12, 55면

1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10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¹⁰³⁾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인간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자기정보 통제권을 가진다. 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동의의 철회권이나 일시 중지요구권을 가진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다. 위반 시 제재조치

1) 행정적 제재 조치

1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10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4호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도 가능하다(제13조, 제14조). 사업자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된다(제39~41조).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자는 개인의 위치정보 열람할 수 있고,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43조).

2) 형사적 제재 조치

2.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의 문제점

가.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문제점

<표 4-10>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보호법 규제현황

주요이슈	
정보통신망법	-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정보에 대한 보호를 명시 -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인정하나, 위치 정보의 보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시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내용에 대한 보호가 주요 내용 - 개념의 확장과 재해석을 통해 위치정보의 보호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있으나, 절차 및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는 무리가 있음
위치정보보호법	- 개인위치정보보호의 범위, 정보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활성화의 순기능을 유도 - 개인정보노출과 사생활침해 등 개인 위치정보서비스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위치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범위문제이다. LBS 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를 구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기술적, 법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세부적인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만14세미만 아동의 인권문제이다. 이것은 부모의 동의만으로 아동의 위치를 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인권이 전적으로 부모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LBS 제공문제이다. 공공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 있을 시에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뒷받침되어야한다.¹⁰⁵⁾

나. 스마트 폰에 의한 위치정보 수집

1) 문제의 발단

105)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 산업의 규제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 2003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인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기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은 이제 스마트폰 400만 시대에서 진화된 휴대용 단말장치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직면했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는 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GPS, 와이파이(Wi-Fi) AP, 3G 기지국 등에서 위치정보를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GPS로 위치측정이 불가능한 도심지나 실내지역의 경우는 WLAN 측위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등 GPS, 와이파이 등을 통한 위치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밀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빠 민지?’ 라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으로 논란이 있었고 문자메시지를 직접 훔쳐볼 수 있는 ‘Secret SMS Replicator’ 라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사생활침해 논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라 함은 거래법적 관점에서 위치정보 관련서비스의 이용계약 체결에 있어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며,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철회는 정보주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계약해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 혹은 자기통제를 통하여 스스로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 가치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되는 공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일종의 정보수집모듈의 통칭으로서 광고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대한 개인정보를 미리 설정된 특정 서버로 보냄으로써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스파이웨어의 경우 무료 유틸리티 혹은 공유 소프트웨어 등을 내려 받는 동안 무의식중에 그 설치를 수락하게 되는 때에는 ‘표의자의 인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에 대한 과실과 확연한 상대방의 고의를 비교형량하고 상대방인 표

시수령자에게 ‘표의자의 인식’을 가로막은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은밀히 스파이웨어의 설치를 설정한 표시수령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해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효과의사는 스파이웨어의 설치나 개인정보의 유출에 있지 않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은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비스제공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하여 근본적이면서 강력하게 시장개입을 행하여 시장구조 그 자체를 결정하는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로 설정된 것이다.¹⁰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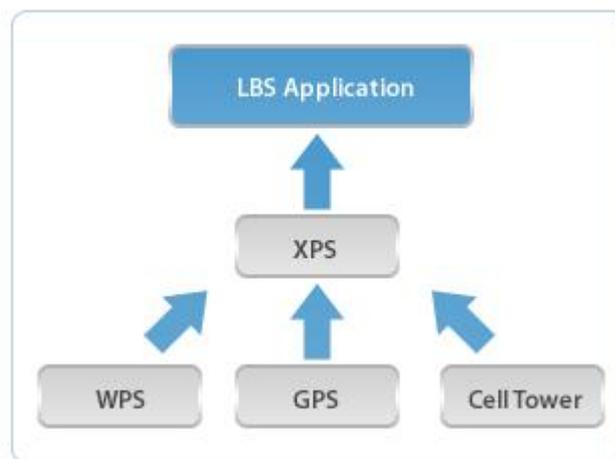
2)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방법

스마트폰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아닌 ‘WiFi’를 활용한 WPS를 통하여 무선랜 기지국과의 거리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애플이나 구글의 고유기술이 아니고 스카이 혹 이라는 벤처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회사는 전세계의 와이파이지역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탐지기 형태의 기능을 가진 차량을 통하여 와이파이, GPS 그리고 무선통신사의 Cell Tower의 위치를 합산하여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좌표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

106) 이민영,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이슈”, TTA Journal No.132, 62-64면

한 좌표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5]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방법



아이폰에는 스카이훅을 이용한 위치정보 추적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2,500개 이상이 되고 안드로이드 폰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스카이 훅의 위치정보 추적의 장점은 기존의 GPS보다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있고, 사전에 정해진 좌표 값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경로 추적도 더욱 빠르며, 무엇보다도 실내에서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로드뷰 차량과 같은 인위적인 좌표수집으로 인하여 대도시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즉, 좌표수집이 안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최대 몇 Km 밖까지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은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지방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발달되지 않은 곳에는 스마트폰의 위치추적이 용이하지 않다.

[그림 4-6] 우리나라의 위치추적을 위한 좌표수집 현황¹⁰⁷⁾

3)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수집의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축적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글로벌 스마트폰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고 위치정보 사업을 하는 애플코

107) <http://www.hankyung.com/>

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 동의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스마트폰(아이폰)에서 위치 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은 또 수집한 위치정보의 일부를 이용자의 단말기에 캐시(cache)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 캐시란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일부다. 애플은 서버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나 방화벽 조치 등으로 누출이나 변경 등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 정보에는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나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사업을 정지하면 사용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애플은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결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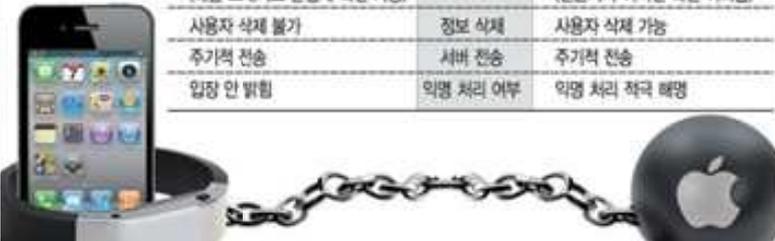
구글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이 인정됐다.

구글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지역기반 서비스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무선 LAN 공유기 등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 정보를 이용해 왔었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이 정보의 이용을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 out) 방식을 전세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기반 위치서비스는 스마트폰용 구글맵과 자사

의 지도정보 서비스에 이용자의 위치를 특정화시켜 주변정보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GPS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면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선 공유기 등과 같은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보내온 와이파이 데이터로 이용자의 위치를 판별하는데 이용해 왔다. 구글은 와이파이 정보수집방법이 스마트폰에서 적은 전력만을 소비하면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림 4-7]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위치정보 저장 방식 비교¹⁰⁸⁾

애플 아이폰	구분	구글 안드로이드폰
로그방식정보 축적	저장방식	캐시형식(자동 삭제)
암호화되지 않음 (애플 트래커로 손쉽게 확인 가능)	암호화	암호화 저장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 어려움)
사용자 삭제 불가	정보 삭제	사용자 삭제 가능
주기적 전송	서버 전송	주기적 전송
입장 안 알림	익명 처리 여부	익명 처리 작극 배명



4) 애플 위치추적에 대한 집단소송

애플의 GPS는 아이폰을 가지고 이동한 경로를 모두 서버에 저장되어 필요하다면

108) <http://news.kukinews.com/>

소비자가 추적 가능하다. 애플의 공식 입장은 이용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위치추적이 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것을 승인한 적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이폰을 동기화한 컴퓨터가 해킹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위치추적은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추적 대상이 어느 건물에 있는지 까지 알아낼 수 있고 이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의 특성상 그 사람의 모든 이동경로가 기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7조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으로 산정해서 5개월간 이용하여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 2만 7천 612명은 2011년 8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림 4-8]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쟁점¹⁰⁹⁾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쟁점	
쟁점	내용
· 애플 서버에서 이용자 위치정보 알 수 있나	· 애플은 위치정보는 수집하지만 이용자는 식별되지 않는다고 발표
·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 사실 알렸나	· 대부분 아이폰 이용자들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몰랐음
· 이용자 위치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 아이폰을 동기화한 PC가 해킹당할 경우 타인에게 위치가 알려질 수 있음

109) <http://media.daum.net/>

다. 현행 법제의 한계

현행법의 한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위치기반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의 일종에 해당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치정보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겠으나 발신자 정보등과 결합할 경우 발신자표시등으로 특정된 개인이 현재 존재하는 곳의 위치와 그 위치를 통한 개인의 행동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 규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각 규정을 보면, “개인정보는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정보통신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동의 없이 수집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치정보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자가 송출하는 전파를 기지국에서 수신하면서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기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할 최소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치정보는 위 각 예외조항의 “정보통신의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정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집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이므로, 위법이 규정한 제한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 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2는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에 관하여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 등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치정보가 “전화번호 등”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를 판명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서비스와 송신인의 발신번호에 관한 정보서비스는 모두 개인정보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송신인의 발신번호는 수신인이 송신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바로 송신인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므로 미리 그 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수신인의 대화거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어렵고, 둘째, 수신인이 송신 당시 수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송신인의 발신번호를 수신인에게 남겨둠으로써 수신인이 송신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래 송신인이 수신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송신한 것이므로 역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치정보는 송신인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을 넘어서서 송신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송신인의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려줄 위험이 있다.

위치정보는 발신번호와 같이 당사자가 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현재 상황을 암시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정보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정보수신자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정보의 기능도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의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제공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게 제한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¹⁰⁾

3. 개선방안

가. 지향

현행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위치정보와 같이 사물에 관한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치정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타법보다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치정보보호법이 최우선 특별법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단순위치정보 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1) 위치정보 개념의 재정의

개인의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사물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현행법령에서 보호하는 위치정보에는 개인위치정보만을 포함하고 사물위치정보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110) 이영대, 최경규, “위치정보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2004. 12, 169-174면

보호에 문제가 없다. 위치정보 관련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 법령 내에서의 위치 정보를 개인위치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2) 사전 동의 요건 완화

현재의 팽창하는 위치정보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은 위치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동의 형식은 문서나, 구두, 전자적 형태, 나아가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포함하는 다소 약한 형태의 동의로도 충분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위치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시적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집단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결합되지 않는 한 위치정보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개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집단위치정보에서 고객이 자신의 위치가 누설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의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어떠한 의문점도 없어야 할 것이다.¹¹¹⁾

3) 행정규제수단의 확보

현행법상 위치정보에서 사물위치정보를 제외하고 집단위치정보에 대한 사업진입 규제 및 행위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적 규제수단의 확보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관청의 조사권을 확보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침해 구제 수단으로 행정 과태료나 벌금의 상한선을 높여 규제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행정관청이 위치정보사

111) Memorandum Opinion for John C. Keeney,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from Richard L. Shiffrin, Office of the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6(Sept. 10, 1999)

업자 등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으로 제공하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4) 입법유형에 관한 결단

가) 포괄적 입법(Comprehensive laws) v. 개별적 입법(Sector laws)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과 사용 그리고 보급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이터보호법의 모델이 있다. 이는 유럽연합에 의해 채택된 유형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보호법규를 채택하지 않고 특별법만을 제정한다. 변화하는 위치정보 기반사업의 확장에 따라 이러한 입법정책은 개별사안의 특수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각각의 새로운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법규들을 통해 사업의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

나) 상향규제(Bottom-Up) v. 하향규제(Top-Down)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해서 미국은 행정감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허용하거나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사후적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들에 게 개인정보보호의 1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개입된다는 의미에서 ‘상향식(Bottom-UP)’ 규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포괄적인 입법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통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집행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하향식(Top-Down)’ 규제라 불린다. 사업자들이 가지는 정보수집자로서의 지위와 정보보호자로서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단순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기반사업의 경우 자율

규제와 사후 구제수단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제3절 위치정보사업의 진흥을 위한 고려

1. 위치정보의 산업적 가치

위치정보서비스의 산업적인 가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분야의 컨설팅 업체인 Berg Insight의 시장 조사 및 전망에 대한 자료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동 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위치정보서비스의 세계 시장은 2006년도에 비해 116% 성장해 6.53억 유로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Navigation(67%), Tracking & Tracing(15%), Community & Entertainment(11%), Search & Information(7%)으로 구분된다. 한편 Berg Insight사는 위치정보서비스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17.3억 유로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치정보의 정확도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도입되고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지금 국내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자동차용 Navigator에서 주로 사용되는 GPS 신호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Cell-ID 정보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구축되고 있는 WiBro기지국의 위치정보도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Wi-Fi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다수의 Wi-Fi 접속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센서네트워크에서 추출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위치

정보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위치정보는 GPS 정보라고 볼 수 있다. GPS 정보는 Navigator 등에서 지금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핸드폰에 저렴한 가격으로 GPS 수신기능을 추가하면 이전의 Cell-ID 방식에 비하여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월등히 높아진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휴대폰에 GPS 수신기능의 추가를 의무화하는 법률규정은 없는 상황이나, 휴대폰 가입자 수가 4,426만 대(2008년 3월)에 이르는 등 휴대폰의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휴대폰에 GPS 수신기능이 부여될 경우 위치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값싸고 정확한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분야에 적용되어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치정보서비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유망 산업임과 동시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 영역에 순기능적인 영향을 주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고 하겠다.

2. 위치정보의 공익적 가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5년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서 구조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위치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양 기관에서 인명의 구조를 위해서 위치정보를 조회한 횟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하여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이전보다 약 37분 정도 단축되었다고 하니 위치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편익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

찰청에서 경찰관서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동안 경찰관서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일각의 우려로 인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어려운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GPS와 같은 위성측위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GPS 위치정보는 산업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Cell-ID 방식은 정확도가 떨어져 사건·사고 현장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GPS 방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위치를 육지나 섬에 있는 이동통신기지국의 Cell-ID로 제공받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낮아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수색작업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해상과 같이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GPS와 같은 위성측위방식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위성측위방식의 위치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제78조 제9항)에서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위치정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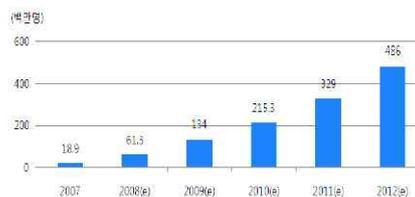
위치정보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이 경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

지만, 새로운 위치정보 고도화 기술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전세계적으로 GPS 단말과 디지털 지도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서 각종 웹 어플리케이션과 결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위치정보의 정확도 개선과 플랫폼 다양화 등으로 시장 활성화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 4-9]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수 전망 (2007~2012) 112)



최근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유저인터페이스(UI)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GPS가 탑재된 휴대폰이나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등은 화면 사이즈를 비롯해 UI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소프트웨어나 각종 센서 기반의 조작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UI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서비스가 일본 사이버맵제팬이 제공 중인 위치정보 연동 어플리케이션 DG Rader

112) www.arg.co.kr, EMarketer, 2008. 09

이다. DG Rader는 GPS나 무선 LAN을 통해 현재위치를 파악해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상점 등을 레이더풍의 UI로 검색해 목적지를 좌표로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기본 내비게이션과는 달리 현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안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에는 유저의 언어 환경을 판별하는 로컬 서비스, 퀘도저장기능 및 각종 데이터 포맷 대응, 게임성이 높은 콘텐츠 분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의 하나로 특정 공간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명한 거리나 장소에 놀러 가면 그곳을 소재로 만든 동영상이나 음악을 제공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위치연동 모바일 게임의 잠재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관련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사이버맵재팬을 통해 현실공간을 무대로 한 위치기반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Useful Networks가 실제 거리를 무대로 한 ‘Geo’라는 땅 따먹기 게임을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GPS가 탑재된 휴대형 게임기를 활용한 보다 복잡한 게임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시장 트렌드 주요 요소들은 위치정보 정밀도 향상, 탑재 단말의 다양화, 웹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계, 이동통신사가 아닌 전문 업체들의 참여 활성화로 정리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풍부한 표현력과 높이 및 이동상태 등의 새로운 정보 요소, 오차 1m 범위의 정밀도 향상, 멀티 터치 UI 보급 등으로 한층 더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기존 위치정보 서비스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참신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 고객기반이 취약하고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전문 업체들로서는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단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림 4-10]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어플리케이션 최신사례(113)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가격	특징
Trapster	iPhone, BlackBerry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상의 속도감시카메라 위치정보 공유 중지신호 카메라와 속도감시 카메라, 압속중인 경찰의 위치정보를 지도에 업데이트 가능. 다음에 오는 운전자들은 피할 수 있게 됨 허용 지역을 지나갈 때 휴대폰에서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도 가능
iNap	iPhone	1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차여행시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없애줌 내장되어 있는 구글맵을 이용해 도착지를 설정하면, iPhone의 GPS 수신기능으로 유저의 위치를 탐지해 도착역에 이르기 전 알려 줌
JOYity	Android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의 위치 추적게임 제공. 이 중 YouCatch 게임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위치가 좌표상에 표시되고, 추적해야 할 사람의 위치정보가 나타남 - 게임 참가자 모두의 위치정보가 일정 간격으로 보여지며, 그 간격은 점차 줄어듦 - 타겟이 80피트 내에 들어오면, 휴대폰의 버튼을 눌러 제거할 수 있으며, 다시 다음 타겟을 추적하게 됨 - 게임 참가자들은 머시간 쫓고 쫓기게 되는 셈. 최후에 남는 사람이 승자
Cab4Me	Android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 상에 유저의 위치와 해당지역의 택시회사 리스트를 보여줌 현재는 유저가 운전자에게 거리명을 알려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제공될 예정 통화가 연결되면, 그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면 됨
ShopSavvy	Android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가격 비교 서비스 쇼핑시 휴대폰 카메라로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과 근처 다른 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보여줌
Google Earth	iPhone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폰용 GoogleEarth 자신의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모든 방향에서 거리와 밀당을 위성으로 보여줌 특정 위치에 대해 Google의 지도기반 사진 데이터베이스인 'Panoramio'와 Wikipedia 서비스 이용가능
Locale	Android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휴대폰 벨소리 모드를 자동으로 변환해 줌 Twitter에 위치정보 자동으로 전송하고, 배경화면을 자동으로 변환하며, 미리 설정된 지역에서는 Wi-Fi와 GPS 기능을 자동으로 해제해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음
GoSkyWatch	iPhone	1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위치와 날짜, 시간을 파악해 하늘에 있는 별의 정보 제공 특정 행성이나 별을 확인하면 이용자와의 거리도 알려줌
SafetyNet	Android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한 지역에서 휴대폰을 감시모드로 전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휴대폰을 흔들기만 하면, 알람이 울리고 Google Talk를 통해 친구와 가족에게 매 30초마다 위치정보가 보내지며, 사진을 찍고 스피커가 동작하며, 911 또는 기타 긴급 전화번호로 통화가 자동연결됨
SitOrSquat	iPhone, BlackBerry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글 맵 서비스와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가깝고 정렬 등급이 높은 공공화장실의 위치정보를 제공

제5장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안

제1절 단기적 개정제안

1. 단기적 법개정 방향

2005년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러한 입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 일각에서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제정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인식하였지만,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촘촘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OS사업자들의 위치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빠르고 실효성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점은 위치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사회적 공로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치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위치정보보호법의 발전적 재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오히려 현재의 위치정보보호에 공백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역할과 기능에 손상이 가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현행 법률의 미흡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을 정비하는 수준의 법개정을 단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의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히 단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개념의 정비

가. 위치정보의 개념 정비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합하여 위치정보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와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는 그 보호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서 사물위치정보만을 다루기 위해서도 허가를 받거나 매우 강도 높은 보호수단을 요구하는 등 지나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사물위치정보의 보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없는 수집을 금지하는 단순한 규정 하나에 그치고 있어서 법적용의 범위에서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만으로 개념정의하고,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는 법적 규제대상에서 배제하여 사물위치정보 사업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2조 (정의)

1. “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위치정보주체”라 함은 위치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나. 위치정보시스템의 개념 정비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침해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스마트폰의 OS사업자가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또 스마트폰과 같은 위치정보 수집장치 내에 위치정보가 저장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장래를 예상하면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위치정보시스템의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이 단기적 입법처방으로 유효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 2항에서 위치정보 관련 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규정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포함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해당 조문에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조 (정의)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 정비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진입규제는 현행과 같은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로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법률 조문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과 관련 설비를 심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

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제3항의 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신고 또는 등록말소

및 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와 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또는 심사를 받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 보호규정 정비

위치정보의 개념을 개인위치정보만으로 축소하게 되면 위치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개인위치정보에 국한되게 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사물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전면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실적으로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 사후적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법제화하면, 우선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활용실태를 폭넓게 조사할 권리를 행정관청에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활용이 위치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용·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제작, 수입,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구입 또는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거나 물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시스템(위치정보주체가 보유한 위치정보 수집장치는 제외한다)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치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위치정보사업 규제 정비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위치정보사업자등

이 위치정보 관련사업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상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유보를 이유로 아예 위치정보와 관계 없는 서비스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과잉대응으로 사실상 유보없는 동의를 강제하려는 시도를 봉쇄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을 들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전환하여 위치정보주체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8조(위치정보의 수집)

②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러한 유보를 이유로 위치정보를 요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의 제공까지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위치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위치정보사업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의 개념을 개인위치정보로 축소하여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개인위치정보” 라고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위치정보” 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하고, 또 “개인위치정보 주체” 도 모두 “위치정보주체” 로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자구정비에 불과하므로 후술하는 신규대조표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끝으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중요한 사후적 규제수단인 과태료 등을 강화하여 위치정보의 실질적 보호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39조 내지 제42조의 형사벌은 다른 법률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위치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위치정보 그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상품으로서 킬러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치정보사업 활성화의 측면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형사벌을 완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에 따라서 위치정보 자체의 침해가 아닌 행정적 규제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전형적인 것이 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하나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벌칙은 현실적으로 매우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 자체에 대한 침해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행정적 규제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였다.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위치정보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상한을 증액하더라도, 행위의 위법성이나 가벌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하고 정당한 범위에서 재량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

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삭제>~~
-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삭제>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
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삭제>~~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
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
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들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
공받은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p>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p> <p>2.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p> <p>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4.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자</p> <p>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이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7.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p>

7. 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p> <p>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위치정보” 라 함은 <u>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위치정보만으</u></p>

<p>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p> <p>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p> <p>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p>	<p><u>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u>)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p> <p>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제></p> <p>3. <u>“위치정보주체”</u> 라 함은 <u>위치정보</u>에 의해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p> <p>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p>
-----------------------------------------------------------------------------------------------------------------------------------------------------------------------------------------------------------------------------------------------------------------------------------------------------------------------------------------------------------------------------	---------------------------------------------------------------------------------------------------------------------------------------------------------------------------------------------------------------------------------------------------------------------------------------------------------------------------------------------------------------------------------------------------------------------------------------------------------------------------------------

<p>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p>	<p>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u>위치정보 수집장치</u>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p>
<p>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p> <p>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p> <p>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p>	<p>제5조(위치정보사업의 <u>등록</u> 등)</p> <p>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u>등록을 하여야</u>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등록을</u> 함에 있어서는 <u>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과 관련 설비를 심사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p>

<p>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p>	<p>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삭제></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등록</u>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등록</u>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u>등록</u>한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u>등록한</u>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u>위치정보</u>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u>변경등록을 하여야</u>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	----------------------------------------------------------------------------------------------------------------------------------------------------------------------------------------------------------------------------------------------------------------------------------------------------------------------------------------------------------------------------------------------------------------------------------------------------------------------------------------------------------------

<p>제6조(임원의 결격사유)</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p>	<p>제6조(임원의 결격사유)</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등록</u>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u>등록</u>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p>
<p>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p> <p>①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p>	<p>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p> <p>①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제3항의 심사를 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변경등록을 한</u>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p>

<p>각각 승계한다.</p> <p>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p> <p>①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를 각각 승계한다.</p> <p>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p> <p>①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u>위치정보주체</u>에게 통보하고 <u>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u>위치정보</u>(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u>위치정보</u>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p> <p>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u>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u>위치정보</u>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u>위치정보</u>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p>
-------------------------------------------------------------------------------------------------------------------------------------------------------------------------------------------------------------------------------------------------------------------------------------------------------------------------------------------------------------------------------------------------------------------------------------------------------------------------------------------------------------	-----------------------------------------------------------------------------------------------------------------------------------------------------------------------------------------------------------------------------------------------------------------------------------------------------------------------------------------------------------------------------------------------------------------------------------------------------------------------------------------------------------------------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u>휴지 신고 또는 등록말소 및 위치정보</u>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21></p>	<p>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와 <u>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u>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p>	<p>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u>위치정보주체</u>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u>위치정보</u>(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u>위치정보</u>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p>

<p>한다. <개정 2008.2.29></p> <p>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p> <p>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p> <p>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이 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p>	<p>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p>

<p>· 정지 등)</p> <p>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p> <p>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p> <p>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p> <p>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p>	<p>· 정지 등)</p> <p>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u>등록</u>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u>등록</u>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p> <p>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등록·변경등록</u> 또는 <u>심사</u>를 받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p> <p>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범위를 넘어 <u>위치정보</u>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p> <p>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u>위치정보</u>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p> <p>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p>
--------------------------------------------------------------------------------------------------------------------------------------------------------------------------------------------------------------------------------------------------------------------------------------------------------------------------------------------------------------------------------------------------------------------------------------------------------------------------------------------------------------	-----------------------------------------------------------------------------------------------------------------------------------------------------------------------------------------------------------------------------------------------------------------------------------------------------------------------------------------------------------------------------------------------------------------------------------------------------------------------------------------------------------------

<p>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u>100분의 10</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p> <p>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p> <p>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p>	<p>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p> <p>①누구든지 <u>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u>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u>위치정보</u>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p> <p>③<u>위치정보 수집장치</u>가 부착된 물건을 <u>제작, 수입, 판매 또는</u> 대여하는 자</p>

<p>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어 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는 <u>이러한 사실을구입 또는 대어받는 자에게 고지하거나 물건에 표시하여야 한다.</u></p>
<p>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②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상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상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②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u>위치정보주체가 보유한 위치정보 수집장치는 제외한다</u>)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상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상태를 점검하고 조사하는</u>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u>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위치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u></p>

	<p><u>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치 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p> <p>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p> <p>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제18조(위치정보의 수집)</p> <p>①위치정보사업자가 <u>위치정보</u>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u>위치정보주체</u>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2. <u>위치정보주체</u>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p> <p>5. 그 밖에 <u>위치정보</u>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u>위치정보주체</u>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u>위치정보</u>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u>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러한 유보를 이유로 위치정보를 요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의 제공까지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p>	<p>③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위치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위치정보사업자가 부담한다.</p>
<p>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p> <p>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만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p>	<p>제19조(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p> <p>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만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p>

<p>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u>위치정보주체</u>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u>위치정보</u>를 <u>위치정보주체</u>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u>위치정보주체</u>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u>위치정보주체</u>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u>위치정보</u>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p> <p>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p>	<p>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u>위치정보</u> 제공 등)</p> <p>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위치정보주체</u>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u>위치정보</u>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u>위치정보</u>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p>

<p>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08.2.29></p>	<p>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1조(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p>	<p>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p>

<p>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p>	<p>제23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p>
<p>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p> <p>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p> <p>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p> <p>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p>	<p>제24조(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p> <p>①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p> <p>②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p> <p>③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p>

<p>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p> <p>④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를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p>	<p>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본인의 <u>위치정보</u>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p> <p>④위치정보사업자들은 <u>위치정보주체</u>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u>위치정보</u>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를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u>위치정보</u>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p>
<p>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p> <p>①위치정보사업자들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제18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p>	<p>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p> <p>①위치정보사업자들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u>위치정보</u>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제18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p>

<p>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p>	<p>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p>
<p>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p> <p>④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p>	<p>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p>
<p>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27조(손해배상)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p>	<p>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p>

<p>보의 이용)</p> <p>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p> <p>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p>	<p>이용)</p> <p>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u>위치정보주체</u>, <u>위치정보주체</u>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u>위치정보</u>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위치정보주체</u>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p> <p>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u>위치정보주체</u>의 동의없이 <u>위치정보</u>를 수집할 수 있으며, <u>위치정보주체</u>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p>
------------------------------------------------------------------------------------------------------------------------------------------------------------------------------------------------------------------------------------------------------------------------------------------------------------------------------------------------------------------------------------------------------------------------------------------------------------------------------------------------------------------------	----------------------------------------------------------------------------------------------------------------------------------------------------------------------------------------------------------------------------------------------------------------------------------------------------------------------------------------------------------------------------------------------------------------------------------------------------------------------------------------------------------------------------------------

<p>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 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개정 2008.2.29></p> <p>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위치정보</u>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u>위치정보</u>의 제공사실을 당해 <u>위치정보주체</u>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 지역 안에 위치한 <u>위치정보주체</u>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u>위치정보주체</u>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u>위치정보</u>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p>	<p>제30조(<u>위치정보</u>의 요청 및 방식)</p>

<p>①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①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p>	<p>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p>

<p>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p> <p>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p> <p>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범위를 넘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p> <p>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5.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p>	<p>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p> <p>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u>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p> <p>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주체</u>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범위를 넘어 <u>위치정보</u>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u>위치정보</u>를 제공받은 자</p> <p>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u>위치정보</u>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5.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u>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p>
<p>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p>	<p>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p>

<p>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p> <p>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p> <p>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p> <p>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p>	<p>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삭제></p> <p>—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삭제></p> <p>—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p> <p>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p> <p>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u>위치정보</u>를 제공받은 자</p>
--------------------------------------------------------------------------------------------------------------------------------------------------------------------------------------------------------------------------------------------------------------------------------------------------------------------------------------------------------------------------------------------------------------------------------------------------------------	-----------------------------------------------------------------------------------------------------------------------------------------------------------------------------------------------------------------------------------------------------------------------------------------------------------------------------------------------------------------------------------------------------------------------------------------------------------------------------------------------------------------

	<p><u>6.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u></p>
<p>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p> <p>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자</p> <p>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p>	<p>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u>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p> <p>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자</p> <p>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u>폐지명령 또는</u>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p>

<p>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5.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보 발송을 거부한 자</p>	<p>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5.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보 발송을 거부한 자</p> <p><u>6.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u></p> <p><u>7.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u></p>
<p>제43조(과태료)</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p> <p>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p> <p>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p>	<p>제43조(과태료)</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5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삭제></p> <p>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등록변경을 하지</u>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p> <p>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p>

<p>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p> <p>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p> <p>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p> <p>12.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을 위반하여 <u>신고하지</u>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p> <p>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u>의 제공을 거절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3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u>를 수집한 자</p> <p>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u>위치정보</u>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p> <p>12.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u>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u>13. 제16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	--------------------------------------------------------------------------------------------------------------------------------------------------------------------------------------------------------------------------------------------------------------------------------------------------------------------------------------------------------------------------------------------------------------------------------------------------------------------------------------------------------------------------------------------

③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u>1,000만원</u>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제2절 장기적 검토방안

1. 서론

위치정보의 효율적인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폭넓은 장기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요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사업이 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위치정보는 한 기본권 주체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헌법 제17조)을 따로 두어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을 신장시키기를 원한다. 따라서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을 갖추기 원한다. 그와 같은 사생활의 내용과 양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나만의 영역’이 나에게만 간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¹¹⁴⁾ 그렇다면 자신의 위치와 위치를 표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위치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관련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

114) 허영, (2009), 『한국헌법론』, 박영사, 380면.

업과 스마트폰 관련 사업은, 개인에게 편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출시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중 많은 수는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단기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입법 작업의 특성상, 단기적 개정안은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나치게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제시한 단기적 입법안은 현재 상황에 매우 적실하다.

그런데 위치기반서비스 및 관련 사업은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할 뿐 아니라, 발전 속도도 빠르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사업의 효과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많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 절은 위치정보보호법의 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위치정보보호법이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본다. 나아가 현행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합당한 규제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위치정보보호법의 특수한 지위

가. 위치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위치정보보호법은 그 규율대상 및 규율목적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른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수집자)와 정보통신서비스수요자(정보주체)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

용함에 있어서 주로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¹¹⁵⁾

반면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에 별도로 위치확인 설비를 추가 설치하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과악한 이용자 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위치정보주체 뿐 아니라 위치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주체인 위치정보사업자의 자격 등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치정보보호법은 단순히 ‘사용자의 남용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주체의 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가 그 ‘사업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때문에 위치정보보호법은 제정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그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다.¹¹⁶⁾

또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격 및 보호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

115)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성명, 주소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치정보 역시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116) 2008. 9. 8. 위치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긴급구조상황에서 구조기관의 위치정보 활용방안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다. 나아가 2010. 1. 8. 위치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계류 중이지만 ‘사업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관련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휴지기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자료제출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법의 경우 정보주체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과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정보가 주요 보호대상이다. 또 보호방법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수집시 사전 동의, 이용 및 제공시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경우 수집, 이용, 제공 시 각 동의의 방법을 모두 ‘엄격한 사전 동의’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 회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및 타 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은 그 규율 대상과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다. 또 위치정보보호법은 제4조에서,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 법에 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문제에 관한 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연히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 및 입법론적 발전은 현재 진보하는 새로운 관련 사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나. 위치정보보호법의 현실적 특수성

위치정보사업자 혹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사업 내용으로 삼는다.¹¹⁷⁾ 위치정보가 아닌 여타 개인정보의 경우,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해당 개인정보를 직접적 기초로 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로 주

117) 이에 대하여는 이후 목차에서 더 상세히 논한다. 다만 위치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입법례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1. 2. 11.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Do Not Track Me Online Act” (인터넷 타겟 마케팅 방지법안)의 경우 위치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제2조 제4항 A호)하고 있다.

소, 성명, 연령 등의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실명확인 또는 배송의 편의를 위하여 수집된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경우,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가 갱신될 뿐 아니라 이 정보가 서비스 제공의 직접적 기초가 된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자와 여타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정보의 활용 및 지득 양태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성명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배송의 편의를 위하여 수집하는 사업자를 가정해보자.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고객의 실명과 배송지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그 주소로 사업자는 물건을 배송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의 정보 활용 양태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 규제 방식도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경우, 사업자별로 위치정보의 수집 여부, 저장 여부, 활용 방식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그 규제의 방법 또한 달라야 한다. 이 점에서, 위치정보의 규제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기반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취급자와는 다른 규제강도가 요구된다. 특히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사업의 양태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변화하는 사업의 형태에 부합하는 개방적 입법이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위치정보 유형의 장기적 검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등장으로 위치정보보호법의 위치정보에 대한 규율은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해진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법령명칭이 당초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입법 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이 비교법적으로 흔하지 않은 입법례여서 해외의 위치정보에 관한 입법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이용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아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의 측면과 이용의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세분화된 각 위치정보 유형에 따라 그 규율 방식과 정도를 달리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적으로 더욱 다양해질 수 있는 여러 위치정보들을 재유형화 하고, 이에 따라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비하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재유형화한 각 위치정보의 유형별로 그 규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행위에 따라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가. 개인과 직결·밀접한 ‘개인위치정보’¹¹⁸⁾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118) 여기서 ‘개인위치정보’란 특정개인의 위치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 값,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 태그 인식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들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그 규제 또한 ‘보호’에 초점을 두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과 같이 그 수집에 있어서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함은 물론이고, 그 동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얻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함에 있어서도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이때의 동의는 포괄적 동의여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자 및 제공 목적에 대한 ‘개별적 동의’ 여야 할 것이며, 만약 제공받을 제3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 전에 그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은 즉시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매회즉시통보의무). 개인위치정보는 특정한 개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 위치정보이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엄격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개인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관련위치정보’ 119)

1) 개인관련위치정보의 수집

개인관련위치정보 역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 중요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관련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때의 동의 역시 법률이 정하는 일정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에 얻은 것이어야 하며, 다만 현행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위치정보사업자의 주소나 그 밖의 연락처 등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제시보다는 사후 요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2) 개인관련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개인관련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때도 법률 규정에 따른 일정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집과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사전 명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외에는 개인위치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개인관련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에 비해 그 매회즉시통보의무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계속되는 정보의 제공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와 같은 방식으로 통보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개인관련위치정

119) 특정 개인이 상시 휴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기기의 위치정보, 고정 배달원이 이용하는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위치정보 등은 개인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그 개인의 위치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보의 활용을 도모하는 측면이 가미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집단과 연관된 ‘단체위치정보’¹²⁰⁾

1) 일반론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사물위치정보 즉,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등에 있어서 수집·이용·제공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단순히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동일하게 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도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유형에 따라 단체위치정보와 단순위치정보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2) 단체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위치정보주체의 개념

그 중에서도 단체위치정보는 특정 집단의 위치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한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나타내는 단순위치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집합체인 집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사물의 위치정보주체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의 위치정보주체는 단순히 소유자를 가리키는 개념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보유자나 명의자, 때로는 이용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단체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도 위치정보기반사업자는 위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단, 이때의 동의는 개인 및 개인관련위치정보와

120)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던 특정 학교나 집단의 통학버스 또는 셔틀버스, 특정 단체가 특정 기간에 대여한 단체관광버스 등이 해당된다.

는 달리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주체가 제공받을 제3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때 사업자는 그 제공받을 자, 제공 목적 등에 대해 사전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일정 기간마다 그 제공 사실에 대해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할 사후 통보의무만을 부담함이 타당할 것이다.

라. 개인의 단순 소유물과 연관된 ‘단순위치정보’¹²¹⁾

단순위치정보는 앞에서 살펴본 위치정보들 중에서도 그 보호가치가 가장 적은 반면 사물지능통신서비스(Machine to Machine : M2M) 등 사업에 있어서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보호보다는 그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새롭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단순위치정보는 집단위치정보와 같이 사람의 위치정보를 나타내기보다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순위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는 요구되나, 그 동의는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며 약관을 통해 미리 전체에 동의한 후 부동의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사후 동의 철회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도 제3자 제공 등에 있어서 사전 고지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사후 통지의무도 약관 등에 의해 같음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1) 여기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 사물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감시카메라의 위치정보, 버스 및 지하철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사업의 형태 및 유형화

가.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사업의 개념

장기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우선 위치정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사업 형태에 적절한 입법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현행 법제의 분류 및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면,¹²²⁾ “위치정보사업자”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¹²³⁾ 이들은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GPS, 위치측의 서버 등)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한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¹²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물류, 관광, 상품정보 등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분류 방식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획득한다.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②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제공 과정이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를 위치정보주체에게 곧바로 제공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마지막으로¹²⁵⁾ 위치정보의

122) 향후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그 정의가 명확해지고, 사물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면 위 개념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정의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23)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124)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8호

125) 현실적으로 위치정보의 저장 작업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한 배치이다.

저장 작업이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혹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앞서 획득, 제공 과정을 거친 위치정보를 저장·보관한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 혹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위치정보의 획득-제공-저장의 과정을 거치며, 각 사업자가 단계별로 다른 모습으로 참여하게 된다.

나.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사업의 유형화

건물 등 부동산이나 자연적인 지형, 지물 등의 지리적 위치를 위치정보개념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정의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한한 개념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보호가치를 지니는 위치정보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침해 위험도가 낮은 위치정보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정의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포괄적인 나머지, 특정시간에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도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주장조차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¹²⁶⁾ 때문에 조리와 상식에 걸맞는 위치정보에 대한 정의 및 유형화를 수행한 후, 이에 따라 각각 규제 정도를 달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치기반서비스의 분류 형태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분류방식은 서비스의 제공 형태, 사용자의 구분, 정확도 등에 따른 기술적 구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서비스 분류방식은 공급자관점에서 기술적 대상을 구분하거나, 서비스의 형태나 성격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구분하는 방식의 서비스 분류기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¹²⁷⁾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업 유형’ 을 중심으로 그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알맞을 것

126) 국립목포대학교(2006),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7면.

127) 진희채, 선요섭, 남광우 (2009),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공간정보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2009. 03.),179면.

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사업 유형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위치정보의 비밀성 침해 및 남용 가능성’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위치정보 활용과정, 즉 획득-제공-저장의 과정은 사업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각 과정 별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다르면서도, 각 사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외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단하게 위치기반서비스의 사업 형태를 표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사업의 분류

	위치정보 획득	위치정보주체에 게 제공	타인에게 제공	획득·제공 위치정보를 저장
제1유형	○			
제2유형	○	○		
제3유형	○	○	○	
제4유형	○	○	○	○

위 분류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위치기반서비스의 사업 형태를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위치정보의 획득-제공-저장 단계를 나누어 사업의 형태를 평가한 것이다. 제1유형의 사업자보다 제4유형의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유형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각 사업자를 유형별로 설명하도록 한다.

1) 제1유형의 사업자 : 위치정보의 획득만을 수행하는 사업자

제1유형의 사업자는 단순히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사업자이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그 위치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와 외형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다른 정보를 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한다. 그 후 위치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운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유형에 속한다.

운세서비스는 위치기반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운세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의 개별 사주와 현재 위치의 상생관계를 매칭하여 다양한 운세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 서비스는 ① 사람의 사주에 따라 오행기운을 파악하고, ② 위치정보를 사용하여 풍수지도에 매칭한다. ③ 그 이후 오늘의 운세를 위치정보주체에게 알려준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획득하였지만, 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위치정보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나아가 위치정보를 저장하지도 않는다.¹²⁸⁾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항상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고 확보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정보 그 자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또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제1유형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것이다.

128) 국립목포대학교(2006), 『위치정보의 활용현황 조사분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82면.

2) 제2유형의 사업자: 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제공하는 사업자

제2유형의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위치정보주체에게만 제공한다. 주변정보서비스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하게 된다. 주변정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지도서비스가 결합하여, 원하는 위치와 주변생활정보(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지하철역, 주유소 및 날씨정보)를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변정보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 기반하여 주변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인근의 관심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요구하는 관심정보를 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하게 된다.¹²⁹⁾

위 제1유형, 제2유형의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동의를 얻어 획득한 위치정보를 저장하지도 않을 뿐 더러,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그 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본인에게만 가르쳐준다.

3) 제3유형: 획득하거나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이 유형의 사업자는 자신이 획득한 위치정보를 타 사업자, 혹은 타인에게 제공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위치정보사업자”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 유형에

129) 국립목포대학교, 위의 책, 67면. 주변정보는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여행정보서비스, 로또 판매점, 공중 화장실 위치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속한다. 즉,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혹은 관리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오빠민지” 등 연인사이 위치추적 서비스 역시, 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 구체적인 기술 구현 상황에 따라 위치정보를 저장하기까지 한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나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단순히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치기반 화면배경서비스는 위와 같은 서비스에 속한다. 위치기반 커플배경화면 서비스는 상대 커플과의 거리를 표시해 줄 뿐 아니라, 둘 사이의 거리에 따라 배경 이미지 외에 애정도를 표현한 레벨바가 여러 단계로 변화하여 상대적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¹³⁰⁾

4) 제4유형의 사업자: 위치정보를 저장, 보관하는 경우

이 유형의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치정보 혹은 획득한 위치정보를 저장, 보관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애플 및 구글의 경우 고객의 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저장, 보관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낱낱이 기록, 저장되어 자신의 사생활이 ‘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형의 사업자는 수년 후에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과거 행적을 모두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자이다.

반면 위치정보가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바로 삭제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위치정보 침해의 유출의 위험이 일시적이고, 그 정보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치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위치정보의 침해나 유출

130) 국립목포대학교, 위의 책, 82면.

의 위험도 지속적이고, 유출되는 위치정보의 양도 매우 많을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해킹의 위험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순간부터 그 침해가능성은 높아지고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도 증가한다.

소위 ‘소셜 미팅’, 또는 ‘채팅 사이트’ 역시 기술적으로는 이 유형의 사업에 속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소셜 미팅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망을 이용한 위치 정보 공개에 동의한 회원 사이에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여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주고받게 해주는 방식의 모바일 서비스이다. 본인의 위치정보 공개에 동의한 첫 번째 이용자가 미팅서비스에 접속하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CP DB 서버로 위치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면 다른 이용자는 미팅서비스 접속 후 첫 번째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CP DB 서버에서 첫 번째 이용자의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그림 5-1] 소셜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의 개념도¹³¹⁾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상이한 사업 유형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상이하므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다르게 된다. 따라서 그 규제의 강

131) 국립목포대학교, 위의 책, 81면 참조.

도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6. 장기적 개정 검토 방향

가. 단계별 규제의 필요성

각 사업 유형에 따라 규제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각 사업 유형별로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다른 상황에서, 발전하는 산업 현실에서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나친 규제를 피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타깃 마케팅 금지 법안의 경우, ① 온라인 기기로 접속한 웹사이트의 주소, ② 접속 일시, ③ 접속 지역정보 혹은 컴퓨터, 온라인 정보에 접속한 수단, 그리고 ④ 주소 및 이름 등은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정확한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의 행동’은 “민감정보”로 분류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자와 개인정보를 단순히 수집한 자를 구분하여, 그 규제의 강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방식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위 법안에서 개인정보를 보관, 저장하는 자는 15,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경우 위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정보를 획득하기만 한 자는 12개월 내 10,000명 이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20,000명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획득’하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 및 저장한 자가 단순히 정

보를 수집·획득한 자에 비하여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¹³²⁾

우리나라 역시 제4유형의 경우, 즉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자의 경우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위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영구히 보관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남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3유형의 경우 제4유형의 사업자보다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덜 하다. 다만 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단순히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바로 폐기하거나, 위치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정보를 제공한 후 그 정보를 바로 폐기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제재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제의 층위를 달리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체계

1) 위치정보 보호규제

위치정보사업자가 부담하는 규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의 위치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위치정보 보호규제’이다. 즉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주체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제3자에게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 위치정보주체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통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제나 규제는 위치정보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행위통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러한 행위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132) 우리나라의 법제 상 위치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법제와 평면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정보의 수집 여부, 저장 여부에 따라 규제의 차원을 달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 위치정보사업 행위규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인과 달리 사업자이므로 엄격한 행위규제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의 행태가 무엇이든 위치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모두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를 다루는 만큼 사업자로서 각종 의무와 같은 행위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의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와 같은 규정은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이건을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하든간에 위치정보의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는 후술하는 진입규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자유롭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나 제17조와 같은 사업자로서의 행위규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설령 타인의 동의를 얻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자로서의 행위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끝으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이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을 누구나 자유롭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일정한 통제권을 확보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가 아니면 타인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기준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로서 허가제를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신고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느냐의 여부로 진입규제를 다루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제정당시에는 바람직한 기준이었는지 몰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하다

고 생각되지 않는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분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험성이 증대되는 기능적 판별기준에 따라 진입규제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위치정보사업을 모두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자유제를 취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가 적어도 위치정보 침해의 위험성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신원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위치정보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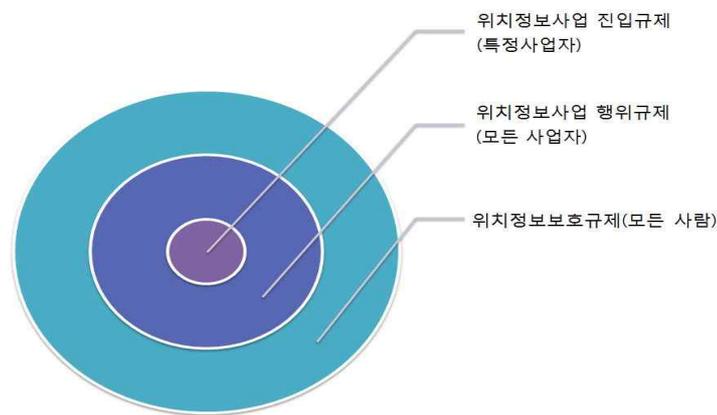
생각해보건대 위치정보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분기점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는 위치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주체에게 그의 위치를 제공함과 더불어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전혀 없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른바 ‘오빠 민지’ 같은 어플처럼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그 위치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후자의 서비스는 확실히 사업진입규제가 요구된다.

또 하나의 기준은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사업의 형태는 관리자에 의한 유출이나 제3자의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이 증대된다.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하고 나서 바로 삭제되는 경우라면 복잡한 위치정보 보호설비를 요하지 않지만,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저장할 인적 물적 설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사업진입통제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정보의 특성상 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알리고자 하는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소극적 보호보다 적극적 공개가 위치정보주체의 의사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한 위치정보를 노출시켜주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본적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령 위치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진입의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통제수단, 즉 위치 정보 보호규제와 위치정보사업 행위통제는 이러한 사업자라 하여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5-2] 위치정보사업 규제 범위



다. 규제 방법의 변화 필요성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미 단기 수정안을 통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일괄적으로 그 규제수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안으로는, 각 사업자의 유형별로 위치정보의 침해, 남용가능성이 상이하므로, 규제의 방안을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등록제’로 규율해야 할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 저장하는 제4유

형의 사업자에 한하여야 한다. 단기적 대안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두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단순히 타인의 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위치정보주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를 저장하지도 않고 열람하지도 않는 수많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지나치게 과중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4 유형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그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가 크다. 방대한 규모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제를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효율적인 감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제공한 위치정보를 수령하여 이를 노출시키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설령 위치정보가 저장되더라도 등록제의 사업진입통제를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반면 제3 유형의 사업자는 ‘등록제’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율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법제 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중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는 신고제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허가제 또는 등록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하되, 행정청 또는 처분청이 사업의 규모 및 위치정보 수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제1 유형, 제2 유형의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다소 과감한 입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에 제공하지 않는다. 즉 온전히 개인정보주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본인의 동의 하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소결론

전술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유형적 재분류 시도를 통해 제시하는 장기적 검토방안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위치정보사업의 재분류에 따른 규제차별화 방안

유형	개념	규제
제4유형	위치정보 수집, 저장	등록제
	(단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제공한 위치정보를 수령하여 노출시키는 서비스)	자유제
제3유형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신고제
제2유형	위치정보 정보주체에게 제공	자유제
제1유형	위치정보 수집만	

그러나 장기적 검토방안에 있어서 규제 방식을 보다 치밀하고 정치하게 다듬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그 사업 유형에 따라 규제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및 단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기반사업자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 단기적으로 그 규제의 수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상존하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단계적 규율을 통해 기본권 침해와 사업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6장 결론

위치정보의 법적 규율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위치정보서비스가 융합시대에서 새로운 킬러응용리케이션으로 부각되어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당위성이 업계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가 외국에 근거를 둔 외국사업자들에게 실효성있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국내사업자의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에 역차별적 요소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반면에 위치정보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일찍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가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여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확고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는 헌법상의 인격권의 핵심으로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 작금의 애플이나 구글의 개인위치정보 침해논란에서 나타나듯 국민 모두 자신의 위치정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개인의 위치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영업의 자유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서비스사업의 진흥과 활성화라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위치정보서비스사업의 진흥과 활성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각종 규제는 그 한도내에서 철폐 내지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방향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로는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의 인격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모든 법적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전적 규제수단으로서 과도한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정도로도 규범목적은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적 규제수단으로서 적절하지만,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고제가 실질적으로는 허가나 인가와 같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개인의 위치정보는 융합시대에서 인격권의 핵심으로서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달하거나 그보다 더 강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국가가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상한선을 높여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범위를 확대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기적 개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당장은 법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고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사회현상에 대한 실효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폭의 단기적인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는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율하여, ‘개인 과 밀접한 위치정보’, ‘개인과 연관된 위치정보’, ‘단체위치정보’, ‘사물위

치정보'의 4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규율체계도 전향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도 '위치정보를 단순 수집' (제1유형), '위치정보를 정보주체에게만 제공' (제2유형),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제3유형), '위치정보를 저장' (제4유형)의 4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사전적 시장진입규제수단을 달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국립목포대학교 (2006),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 산업의 규제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 2003.
- 김민호, “인·허가 기준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2009.
- 박찬휘 외, “LBS 시장과 산업의 동향 및 전망”, TTA Journal, No. 123
- 선정원, “기한방식에 의한 인·허가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 행정법연구, 2001 하반기.
- 오태원, “개인 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 서비스의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제6호, 2002, 1-15면; 조용혁,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정보화정책, 제12권 제2호, 2005
- 이민영,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이슈”, TTA Journal No.132
- 이영대, 최경규, “위치정보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2004년 12월
- 정구민 외, “스마트폰에 따른 LBS 패러다임 변화 및 서비스 동향”, 정보와 통신, 2011년 6월
- 지광석, 김태윤,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2010 여름).
- 진희채·선요섭·남광우 (2009),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공간정보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2009. 03.)
-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커머스 발표자료,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9판, 박영사, 2010.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허영, 한국헌법론(전정5판), 박영사, 2009.

<국외 문헌>

Iris A. Junglas, “Location-based service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1 No. 3

Paolo Bellavista, “Location-Based Services: Back to the Future”, IEEE Pervasive computing, Vol. 7 Issue 2

Jeremy G, Dario B. and John D., “Mobile Location Services : Market Strategies,” Ovum, 2000

Memorandum Opinion for John C. Keeney,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from Richard L. Shiffirin, Office of the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6(Sept. 10, 1999)

Wired Magazin,

<기타>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8&cDateYear&cDateMonth=09&cDateDay=06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cDateYear&cDateMonth=08&cDateDay=

<http://www.bloter.net/archives/>

<http://googlemobile.blogspot.com/2009/06/search-by-voice-and-transit-directions.html>

<http://www.etnews.co.kr/>

234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

<http://blog.daum.net/kcc>

<http://www.hankyung.com/>

<http://news.kukinews.com/>

● 저 자 소 개 ●

오 병 철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수료
- 독일 Mannheim대학교 객원학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11

융합시대에 적합한

LBS 사업분류 및 규제체계 연구

(A Study of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of LBS
in New Convergence Society)

2011년 10월 10 일 인쇄

2011년 10월 11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E-mail:

Homepage: www.kcc.go.kr

인 쇄 법 현
